



언론중재위원회 2016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1부 총론

제1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11
제2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14
제3장	총평	16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중재	21
제1절	개요	21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21
	2. 중재부의 구성	22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23
	1. 청구현황	23
	2. 청구권별 현황	23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4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5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5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6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7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28
	1. 피해구제율 현황	29
	2. 청구권별 처리결과	30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4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5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6
	6. 중재부별 처리결과	37
	7.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38
제4절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40
제5절	평가	41
제2장	시정권고	43
제1절	개요	4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4
	1. 심의대상 매체 확대 및 심의모니터링 제도 개선	44
	2.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44
	3. 시정권고 현황	45
	4. 침해 유형별 분석	45
	5. 매체 유형별 분석	52
제3절	평가	52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3장 선거기사심의	54
제1절 개요	54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54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5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6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56
2. 2016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59
제3절 평가	60
제1장 언론피해 상담	65
제1절 개요	6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6
1. 상담신청 유형	66
2. 상담 처리결과	67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68
4. 상담매체 유형	68
5. 상담신청인 유형	69
6. 상담대상 유형	70
7. 상담내용 유형	71
제3절 평가	72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73
제1절 개요	7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74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74
2. 분쟁해결 전문연수	75
3.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82
4. 교육콘텐츠 개발	83
제3절 평가	85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87
제1절 개요	8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88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88

2. 세미나 · 토론회 개최	92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97
제3절 평가	98
제4장 이용만족도조사 및 대국민 여론조사	99
제1절 개요	99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00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100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102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102
4. 대국민 여론조사결과	103
제3절 평가	104
제5장 홍보	106
제1절 개요	106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07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107
2. 블로그 및 SNS 운영	107
3. 매체 광고	108
4. 일반인 참여를 통한 홍보 콘텐츠 마련	109
5. 미디어 퍼블리시티	110
6. 위원회 사료의 디지털 전시	110
제3절 평가	111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12
1.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112
2. 국제컨퍼런스 협력	114
3. 보도기준 토론회 개최	115
4.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교육 실시	115
5. 사회공헌 활동	117

제4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의견

제1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및 의견121

1.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안(2016. 10. 28. 발의)121
2.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2016. 9. 1. 발의) 및
노웅래 의원(2016. 9. 5. 발의) 대표발의안127
3. 위원회 의견128

제2장 기타 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의견129

1.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129
2. 위원회 의견129

제5부
2017년도
업무계획

제1장 2017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133

제2장 2017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135

부 록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141
2. 설립근거 및 기능151
3. 연혁151
4. 기구153
5. 2016년 예·결산155
6. 2016년 국정감사 주요내용155
7. 2016년 주요 발간물 목록156



[표 1]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	23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4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4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5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6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7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8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9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30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30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32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32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33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33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33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4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5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6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7
[표 20]	중재부별 처리결과	38
[표 21]	중재사건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40
[표 22]	중재사건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41
[표 23]	중재사건 처리결과	41
[표 2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46
[표 25]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52
[표 2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56
[표 2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57
[표 28]	2016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59
[표 29]	상담신청 유형	67
[표 30]	상담 처리결과	67
[표 31]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68
[표 32]	상담매체 유형	69
[표 33]	상담신청인 유형	70
[표 34]	상담대상 유형	71

[표 35]	상담내용 유형	71
[표 36]	2016년도 교육 실시현황	74
[표 37]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75
[표 38]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101
[표 39]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필요성	101
[표 40]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102
[표 41]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103
[표 42]	대국민여론조사 -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104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제1부 **총론**

제 1 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위원회는 2016년 정보통신망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언론피해구제시스템 구축>을 2016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품위 있는 언론조정을 통해 위원회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선거기사심의 공정성을 위한 심의역량 증진 및 인터넷 매체의 법익침해 관련 시정 권고 심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언론조정, 심층적인 기사심의>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전문성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위원회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언론피해구제시스템 구축

- 2016. 10. 28.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 기사 댓글 및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상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6년 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랩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해 수정·보완·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 10명 중 9명(89.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복제기사나 기사덧글에 대한 일괄적 피해구제서비스를 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84.6%, 90.6%가 찬성한다고 답변, 제도 보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 「2016년도 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피신청인 응답자의 72.8%가 침해배제 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13.7%p 상승했다. 복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서비스를 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피신청인 응답자의 66.4%가 동의하여, 전년도 47.5%에 비해 18.9%p 상승하는 등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됐다.
-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확산, 전과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닷컴 등의 매체에 피해구제보도문 자동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각 언론사 모바일 페이지에도 피해구제보도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 매체 유형별 피해구제 적용 사례 등을 검토했다.
- 위원회가 운영하는 블로그 내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반박문, 해설자료 등을 게시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외홍보지에 〈언론중재법 NOW〉 코너를 신설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홍보했다.
- 정기세미나 및 각종 토론회 주제 발표, 〈계간 언론중재〉 및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등의 연구기획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 적극적인 언론조정, 심층적인 기사심의

- 중재위원 조정역량 향상 및 조정심리 관행 개선을 통한 당사자의 위원회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재위원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언론분쟁의 공정하고 간편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을 활용, 직권조정결정 비율을 높였다.
- 조정심리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일방의 치우침 없는 조정심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심리진행의 공정성을 확보했다(2016년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신청인의 중재부 심리진행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점수가 전년(79.4점)에 비해 4.6점 상승(84.0점)).

- 조정심리 당사자들에게 조정절차 안내문, 직권조정결정 안내문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 발송하고, 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당사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 10차레에 걸친 보도기준 토론회를 통해 인격권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판결을 분석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인격권에 관한 조정실무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갔다.
- 재택 모니터링제도를 사무실 상주 시정권고 심의원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심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시정권고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해설집’을 제작했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사심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거기사 심의기준 반복 위반 매체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보도 심의 유관 기관 업무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 인터넷 신문 심의 대상 매체를 기존 1,000여 개에서 2,000개로 확대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법익침해 심의를 강화했으며, 법익 침해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해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교육 부서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문성있는 교육서비스 제공

- 교육 수요자의 직업·분야 등에 맞춰 적합한 체험형 콘텐츠(모의조정, 도전골든벨, 토론형 스터디 등)를 개발하고, 특정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될 때는 이와 관련한 콘텐츠를 제작해 시의적절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교육 강사별로 특화된 전문 분야(저작권, 개인정보보호, 설득 전략 등)를 나누어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 채널에이(2월), 인터넷신문위원회(8월) 등과 MOU를 체결, 언론인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언론인 교육 강화했다.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과정 운영 체계를 심화시켰으며, 분쟁해결 전문 연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해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했고, 위원회 블로그, 페이스북, 뉴스레터 등을 통해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제 2 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조사보고서 양식을 신설하고 복잡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증거조사 절차를 개선했다.
- 펴글·맷글 삭제, 임시조치, 팟캐스트 처리 결과 등 특이한 조정사례를 각 중재부간 수시로 공유해 조정심리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 언론피해구제 상담 대상에 맷글, 복제기사, 유사미디어 항목을 신설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 새로운 언론피해 관련 상담 사례 데이터를 축적했다. ‘맷글 및 복제기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언론조정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조정신청서 작성례를 수정했다.
- 교육 강사 간 교육 편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 대상자별 교육 PPT 교안화 작업을 완료하고, 교육동영상 콘텐츠 및 언론인 핸드북(「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증보판을 제작했다.

- 대외홍보지 콘텐츠를 각 매체(뉴스레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알맞은 형태로 변환·게시해 도달률을 높이고,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공유이벤트(웹툰공모전 등)를 실시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위원회 페이스북 <2016년 대한민국 SNS 대상 - 올해의 페이스북 부분> 최우수상 수상).
- 성과지표 점수(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이용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가 90.6점으로 2015년도 90.0점에 비해 0.6점 상승했다.
- 직원 연간 교육 이수 시간제를 도입, 상시적인 자기개발 학습 문화를 조성했다.

제 3 장 총 평

위원회는 2016년에도 국민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쉽 없이 노력했다. 2016년 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총체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등 인터넷 매체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구제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 10. 28. 박상도 의원 대표발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에게 개정안 마련 취지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한 결과다.

또한 토론회, 세미나 및 다양한 간행물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취지, 목적 등을 알리고,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피해구제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언론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중재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정심리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공유함으로써 품위 있고 공정한 조정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위원회 주요 법정업무인 기사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실 상주 시정권고 심의원 제도를 운영했으며, 시정권고 인력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인격권에 관한 조정실무 기준 마련을 위해 10차에 걸친 치열한 내부 토론과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실무기준 작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셋째, 교육 수요자의 직업·활동 분야 등에 따라 적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에 활용하는 한편, 교육 강사별로 특화된 전문 분야를 부여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 위원회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쉽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 1 장

언론조정 · 중재

제 1 절 개 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원회를 통해 언론사등(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비용 없이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쟁해결 절차로 평가된다. 위원회의 연간 조정사건 처리건수는 1981년 설립 당시에는 44건에 불과하였으나, 국

민의 권익의식 향상과 매체수의 증가로 인해 2006년 1,087건, 2010년 2,205건, 2016년에는 3,170건으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외에 중재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분쟁해결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없이 간편하게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재는 양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있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중재부의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된다.



[언론조정심리 모습]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서울 8개, 지역 10개) 중재부를 두고 있으며,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3,17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언 전 회장 부인 권윤자 씨와 유 전 회장과 연관된 종교단체인 기독교복음침례회가 2년 동안 대량으로 신청한 사건(이하 ‘대량사건’)이 2014년에는 16,117건(권윤자 11,306건, 기독교복음침례회 4,811건)이, 2015년에는 1,908건(권윤자 1,210건, 기독교복음침례회 698건)이 있었다. 이러한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건수는 2014년 2,931건, 2015년 3,319건으로 3년 연속 3천 건 안팎의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

(2012. 1. 1. ~ 2016. 12. 31.)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청구 건 수	2,401	2,433	19,048 (2,931)	5,227 (3,319)	3,170
전년 대비 증감	277	32	16,615 (498)	-13,821 (388)	-2,057 (-149)

* () 안의 숫자는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건수

2. 청구권별 현황

2016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555건(49.1%), 손해배상청구 1,069건(33.7%), 반론보도청구 386건(12.2%), 추후보도청구 160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59.3%)에 비해 10.2% 낮았지만, 여전히 전체 청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년간 평균 비율도 60%를 넘어서고 있다. 차 순위의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33.7%로 2015년 대비 3.9% 올랐고, 반론보도청구 비율 역시 2015년 대비 4.2% 증가했다.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청구명 \ 연 도	2014	2015	2016	합 계
정 정	12,888 (67.7)	3,098 (59.3)	1,555 (49.1)	17,541 (63.9)
반 론	305 (1.6)	419 (8.0)	386 (12.2)	1,110 (4.0)
추 후	130 (0.7)	150 (2.9)	160 (5.0)	440 (1.6)
손 배	5,725 (30.1)	1,560 (29.8)	1,069 (33.7)	8,354 (30.4)
계	19,048 (100)	5,227 (100)	3,170 (100)	27,445 (100)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1,661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573건(18.1%), 방송 423건(13.3%), 인터넷뉴스서비스 330건(10.4%), 뉴스통신 165건(5.2%)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처음 포함되었는데, 그 비율이 꾸준히 늘어 2016년 처음으로 전체 사건 중 50%를 넘어섰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매체유형 \ 연 도	2014	2015	2016	합 계	
신문	일간신문	1,378 (7.2)	619 (11.8)	405 (12.8)	2,402 (8.8)
	주간신문	139 (0.7)	138 (2.6)	168 (5.3)	445 (1.6)
방 송	3,776 (19.8)	892 (17.1)	423 (13.3)	5,091 (18.5)	
잡 지	25 (0.1)	18 (0.3)	16 (0.5)	59 (0.2)	
뉴스통신	1,117 (5.9)	264 (5.1)	165 (5.2)	1,546 (5.6)	
인터넷신문	8,436 (44.3)	2,490 (47.6)	1,661 (52.4)	12,587 (45.9)	
인터넷뉴스서비스	4,177 (21.9)	799 (15.3)	330 (10.4)	5,306 (19.3)	
기 타		7 (0.1)	2 (0.1)	9 (0.0)	
계	19,048 (100)	5,227 (100)	3,170 (100)	27,445 (1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16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2,972건(93.8%)으로 예년과 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초상권 침해 81건(2.6%), 사생활 침해 51건(1.6%), 재산상 손해 33건(1.0%), 성명권 침해 19건(0.6%) 등의 순이었다.

기타 법익 침해 사건은 대부분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손해배상 또는 기사 노출 제외 및 검색 차단 등으로 피해구제되었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침해유형 \ 연 도	2014	2015	2016	합 계
명예훼손	18,793 (98.7)	4,891 (93.6)	2,972 (93.8)	26,656 (97.1)
초상권 침해	208 (1.1)	205 (3.9)	81 (2.6)	494 (1.8)
음성권 침해	5 (0.0)	14 (0.3)		19 (0.1)
성명권 침해	8 (0.0)	10 (0.2)	19 (0.6)	37 (0.1)
사생활 침해	14 (0.1)	56 (1.1)	51 (1.6)	121 (0.4)
재산상 손해	17 (0.1)	51 (1.0)	33 (1.0)	101 (0.4)
기 타	3 (0.0)		14 (0.4)	17 (0.1)
계	19,048 (100)	5,227 (100)	3,170 (100)	27,445 (100)

*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16년 전체 조정사건 3,170건 중 개인이 신청한 조정청구가 1,919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업체가 390건(12.3%)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단체 373건(11.8%), 종교단체 110건(3.5%), 지자체 90건(2.8%), 교육기관 83건(2.6%)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종교단체의 조정청구가 많았던 2014년(4,954건, 26.0%)과 2015년(728건, 13.9%)에 비해, 2016년에는 전체 청구 중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3.5%로 나타나 종교단체 등의 대량사건이 없었던 2014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신청인 \ 연 도	2014	2015	2016	합계
개 인	13,021 (68.4)	3,123 (59.7)	1,919 (60.5)	18,063 (65.8)
국가기관	71 (0.4)	85 (1.6)	64 (2.0)	220 (0.8)
지 자 체	81 (0.4)	117 (2.2)	90 (2.8)	288 (1.0)
공공단체	103 (0.5)	54 (1.0)	67 (2.1)	224 (0.8)
일반단체	315 (1.7)	570 (10.9)	373 (11.8)	1,258 (4.6)
종교단체	4,954 (26.0)	728 (13.9)	110 (3.5)	5,792 (21.1)
기 업 체	331 (1.7)	379 (7.3)	390 (12.3)	1,100 (4.0)
언 론 사	90 (0.5)	87 (1.7)	74 (2.3)	251 (0.9)
교육기관	82 (0.4)	84 (1.6)	83 (2.6)	249 (0.9)
계	19,048 (100)	5,227 (100)	3,170 (100)	27,445 (10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6년 전체 조정청구건수 3,170건 중 2,266건(71.5%)은 서울 8개 중재부가, 904건 (28.5%)은 지역 10개 중재부가 접수·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대다수 조정사건이 서울중재부 신청사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재부 내에서는 경기중재부의 접수건수가 183건(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광주중재부 163건 (5.1%), 경남중재부 145건(4.6%) 등의 순이었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 도 중재부	2014	2015	2016	합 계
서울중재부	17,750 (93.2)	4,225 (80.8)	2,266 (71.5)	24,241 (88.3)
부산중재부	138 (0.7)	78 (1.5)	110 (3.5)	326 (1.2)
대구중재부	113 (0.6)	80 (1.5)	73 (2.3)	266 (1.0)
광주중재부	83 (0.4)	214 (4.1)	163 (5.1)	460 (1.7)
대전중재부	96 (0.5)	84 (1.6)	66 (2.1)	246 (0.9)
경기중재부	548 (2.9)	259 (5.0)	183 (5.8)	990 (3.6)
강원중재부	16 (0.1)	42 (0.8)	15 (0.5)	73 (0.3)
충북중재부	71 (0.4)	71 (1.4)	50 (1.6)	192 (0.7)
전북중재부	53 (0.3)	78 (1.5)	55 (1.7)	186 (0.7)
경남중재부	150 (0.8)	62 (1.2)	145 (4.6)	357 (1.3)
제주중재부	30 (0.2)	34 (0.7)	44 (1.4)	108 (0.4)
계	19,048 (100)	5,227 (100)	3,170 (100)	27,445 (100)

* () 안의 숫자는 %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16년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조정사건 접수가 2,265건(71.5%)으로 나타나 접수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된 접수방법은 위원회의 전자조정중재 홈페이지인 ‘언론중재 Eye-Net’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488건, 15.4%)였다. 방문을 통한 접수가 302건(9.5%), 우편을 통한 접수가 114건(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대량사건의 접수가 위원회 언론조정중재 홈페이지인 ‘언론중재 Eye-Net’을 통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전체 조정사건 중 전자문서에 의한 접수 비중이 각각 87.9%, 53.0%로 다른 접수 방법보다 가장 높았다. 그러나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가 2014년 50.9%(1,493건), 2015년 57.6%(1,91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자우편을 통한 사건 접수 비중이 계속해서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도 \ 구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기타	계
2014	392 (2.1)	136 (0.7)	1,742 (9.1)	16,738 (87.9)	40 (0.2)		19,048 (100)
2015	409 (7.8)	130 (2.5)	1,913 (36.6)	2,772 (53.0)	1 (0.0)	2 (0.0)	5,227 (100)
2016	302 (9.5)	114 (3.6)	2,265 (71.5)	488 (15.4)	1 (0.0)		3,170 (100)

* () 안의 숫자는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총 3,170건의 2016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366건(43.1%), 조정성립 961건(30.3%), 조정불성립결정 416건(13.1%), 직권조정결정 300건(9.5%), 기각 108건(3.4%), 각하 19건(0.6%) 순이었다.

특히 직권조정결정의 비율이 9.5%로 2015년(6.1%)과 비교하여 3.4%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조정불성립결정은 13.1%로 2015년(13.6%)에 비해 0.5%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각 중재부가 조정성립이 되지 않을 사건 중에서도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직권조정결정을 한 사건 중 60.7%가 양 당사자 동의를 거쳐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피해구제율은 72.3%로 2015년 피해구제율(77.9%)과 비교하여 5.6%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에는 피해구제율이 높았던 대량사건의 영향이 있었으며, 2016년의 경우 한 신청인이 85건의 청구를 한 후 사유불명으로 취하한 것이 피해구제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연 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	6.1	0.7	0.6	5.8	0.6	0.4	85.8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18.0	4.2	1.9	13.6	6.2	0.6	55.6	
2016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366 (1,049)	72.3%
	%	30.3	5.7	3.7	13.1	3.4	0.6	43.1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circ \text{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times 100$$

* 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등을 의미함

1.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요건이 적합한 사건 중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16년 피해구제율은 72.3%로 2015년 피해구제율(77.9%)에 비해 5.6% 하락하였다. 그 원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졌던 대량사건의 피해구제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전체 사건(5,227건)에서 36.5%를 차지하였던 대량사건(1,908건)이 높은 피해구제율(85.9%)을 기록하였기에 2015년 전체 사건의 피해구제율(77.9%)도 대량사건이 없던 과거와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16년에는 이전과 같은 대량사건이 없어 전체 사건의 피해구제율 역시 2015년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A)	기각,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A-B)	피해구제건수(C)	피해구제율 C/(A-B)
2014		19,048	182	18,866	16,728	88.7%
2015		5,227	354	4,873	3,797	77.9%
2016		3,170	127	3,043	2,201	72.3%

2.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0.8%, 반론보도청구 32.4%, 추후보도청구 20.0%, 손해배상청구 30.4%로, 2015년(정정보도청구 15.2%, 반론보도청구 40.1%, 추후보도청구 22.0%, 손해배상청구 17.2%)과 비교해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성립률은 각각 15.6%, 13.2%씩 상승하였다. 한편 반론보도청구의 조정성립률이 7.7% 하락하였으나, 이는 한 신청인이 28건의 반론보도청구를 사유불명으로 자진취하한 영향 때문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정정	1,555 (100)	479 (30.8)	150 (9.6)	223 (14.3)	53 (3.4)	7 (0.5)	643 (41.4)
반론	386 (100)	125 (32.4)	41 (10.6)	45 (11.7)	20 (5.2)	2 (0.5)	153 (39.6)
추후	160 (100)	32 (20.0)	8 (5.0)	4 (2.5)		5 (3.1)	111 (69.4)
손배	1,069 (100)	325 (30.4)	101 (9.4)	144 (13.5)	35 (3.3)	5 (0.5)	459 (42.9)
계	3,170 (100)	961 (30.3)	300 (9.5)	416 (13.1)	108 (3.4)	19 (0.6)	1,366 (43.1)

* () 안의 숫자는 %

사 례 | 정정보도

A언론사는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혐의자와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사실 확인 없이 동명이인에 불과한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A언론사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반론보도

B언론사는 신청인 회사가 리조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관련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개발업체가 약정한 날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이면합의, 공사방해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개발업체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추후보도

C언론사는 조경용 현무암 불법 채취를 목인한 단속 담당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심리결과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손해배상 1

D방송사는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신청인들이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보도 당시 수사 중인 사안이었음에도 신청인들의 혐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D방송사는 신청인들의 피해를 인정하여 추후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액 8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손해배상 2

E언론사는 신청인들이 생활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취재나 방송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주제와 관계없는 신청인들의 개인사를 무단으로 보도하여 사생활이 침해당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기사 노출 제외 및 검색 차단과 함께 손해배상액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1) 처리현황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30.4%, 직권조정결정 9.4%, 조정불성립결정 13.5%, 기각 3.3%, 취하 42.9%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 비율은 2015년 17.2%에 비해 13.2% 상승하였고, 대량사건이 없었던 2013년(32.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5,725 (100)	393 (6.9)	44 (0.8)	49[1] (0.9)	414[7] (7.2)	80 (1.4)	36 (0.6)	4,709[4,350] (82.3)
2015	1,560 (100)	269 (17.2)	94 (6.0)	39[1] (2.5)	245[2] (15.7)	210 (13.5)	11 (0.7)	692[612] (44.4)
2016	1,069 (100)	325 (30.4)	66 (6.2)	35[2] (3.3)	144 (13.5)	35 (3.3)	5 (0.5)	459[359] (42.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2016년 손해배상청구 1,069건 가운데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70건으로 6.5%에 불과하였지만, 금전배상 이외에 피해구제 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30.4%라는 높은 조정성립 결과가 나왔다.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14. 1. 1. ~ 2016. 12. 31.)

연 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14	1,055	112	10.6%
2015	1,210	100	8.3%
2016	1,069	70	6.5%

* 2014년, 2015년은 전체사건 중 대량사건을 제외함

2) 청구액 및 조정액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0만 원, 최고 107억 8,638만 원, 평균 1억 1,312만 원, 중앙액 2,000만 원이었다. 청구액의 중앙액은 최근 3년간 2,000만 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액은 최저 1만 원, 최고 3,000만 원이었으며, 평균 224만 원, 중앙액 1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14. 1. 1. ~ 2016. 12. 31. / 단위 : 원)

연도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4		20,000	10,000,000,000	36,789,730	20,000,000
2015		2	60,000,000,000	129,582,591	20,000,000
2016		100,000	10,786,381,412	113,115,649	20,000,00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4. 1. 1. ~ 2016. 12. 31. / 단위 : 원)

연도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4		50,000	30,000,000	1,953,000	1,000,000
2015		500,000	4,000,000	1,602,000	1,000,000
2016		10,000	30,000,000	2,235,000	1,000,000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6. 1. 1. ~ 2016. 12. 31. / 단위 : 원)

침해유형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38	10,000	30,000,000	2,653,0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16	500,000	7,500,000	2,125,000	1,500,000	500,000
사생활 침해	8	750,000	2,500,000	1,438,000	1,375,000	750,000
재산상 손해	6	1,000,000	2,000,000	1,333,000	1,000,000	1,000,000
기타	2	500,000	1,000,000	750,000	750,000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6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1,069건(100%)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932건(87.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사건 60건(5.6%), 사생활 침해 43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명예훼손 사건이 취하 387건(41.5%), 조정성립 286건(30.7%), 조정불성립결정 137건(14.7%) 등의 순이었다. 침해 유형 중 초상권 침해 사건의 조정성립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사생활 침해 사건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2.3%로 가장 낮았다.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932 (100)	286 (30.7)	87 (9.3)	137 (14.7)	30 (3.2)	5 (0.5)	387 (41.5)
초상권 침해	60 (100)	22 (36.7)	8 (13.3)	4 (6.7)	3 (5.0)		23 (38.3)
사생활 침해	43 (100)	8 (18.6)	2 (4.7)	1 (2.3)			32 (74.4)
재산상 손해	24 (100)	7 (29.2)	4 (16.7)	2 (8.3)	2 (8.3)		9 (37.5)
기타	10 (100)	2 (20.0)					8 (80.0)
계	1,069 (100)	325 (30.4)	101 (9.4)	144 (13.5)	35 (3.3)	5 (0.5)	459 (42.9)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로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주간신문 45.8%, 일간신문 37.3%, 인터넷신문 30.0%, 뉴스통신 29.1%, 방송 28.1%, 인터넷뉴스서비스 19.7%, 잡지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잡지 43.8%, 방송 19.4%, 주간신문 17.9%, 일간신문 15.8%, 인터넷뉴스서비스 13.3%, 인터넷신문 10.5%, 뉴스통신 8.5% 순이었다.

주간신문,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조정성립률이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문과 방송 등의 매체는 통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기 때문에 피해의 중복 및 확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회는 조정내용이 원 기사가 전파된 타 매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 문안'을 마련하여 합외서 등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매체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신문	일간신문	405 (100)	151 (37.3)	38 (9.4)	64 (15.8)	16 (4.0)		136 (33.6)
	주간신문	168 (100)	77 (45.8)	23 (13.7)	30 (17.9)	3 (1.8)	2 (1.2)	33 (19.6)
방송		423 (100)	119 (28.1)	41 (9.7)	82 (19.4)	16 (3.8)	6 (1.4)	159 (37.6)
잡지		16 (100)	3 (18.8)		7 (43.8)	2 (12.5)		4 (25.0)
뉴스통신		165 (100)	48 (29.1)	10 (6.1)	14 (8.5)	11 (6.7)		82 (49.7)
인터넷신문		1,661 (100)	498 (30.0)	157 (9.5)	175 (10.5)	49 (3.0)	11 (0.7)	771 (46.4)
인터넷 뉴스서비스		330 (100)	65 (19.7)	29 (8.8)	44 (13.3)	11 (3.3)		181 (54.8)
기타		2 (100)		2 (100)				
계		3,170 (100)	961 (30.3)	300 (9.5)	416 (13.1)	108 (3.4)	19 (0.6)	1,366 (43.1)

* () 안의 숫자는 %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2,972건으로 전체 3,170건(100%)의 93.8%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1,264건이 취하되었고 911건이 조정성립되었다.

사건들의 침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초상권 침해 35.8%, 명예훼손 30.7%, 재산상 손해 30.3%, 사생활 침해 17.6% 등의 순이었고,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명예훼손 13.6%, 재산상 손해 12.1%, 초상권 침해 6.2%, 사생활 침해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2,972 (100)	911 (30.7)	278 (9.4)	405 (13.6)	98 (3.3)	16 (0.5)	1,264 (42.5)
초상권 침해	81 (100)	29 (35.8)	14 (17.3)	5 (6.2)	4 (4.9)	2 (2.5)	27 (33.3)
성명권 침해	19 (100)						19 (100)
사생활 침해	51 (100)	9 (17.6)	4 (7.8)	2 (3.9)			36 (70.6)
재산상 손해	33 (100)	10 (30.3)	4 (12.1)	4 (12.1)	4 (12.1)		11 (33.3)
기타	14 (100)	2 (14.3)			2 (14.3)	1 (7.1)	9 (64.3)
계	3,170 (100)	961 (30.3)	300 (9.5)	416 (13.1)	108 (3.4)	19 (0.6)	1,366 (43.1)

* () 안의 숫자는 %

사 례 | 재산상 손해

F언론사는 서울 소재 모 술집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CCTV에 찍힌 사건 영상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영상을 사용할 경우, 신청인의 음식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음식점 입구 등이 그대로 방송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조정대상보도의 노출 제외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액 200만 원 지급과 함께 피신청인의 유감표명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6년 신청인 유형별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170건(100%) 중 개인 1,919건 (60.5%), 기업체 390건(12.3%), 일반단체 373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은 취하 927건(48.3%), 조정 성립 530건(27.6%), 조정불성립결정 200건(10.4%) 등의 순이었다. 신청인 유형 중 조정성립 비율은 지자체 57.8%, 종교단체 50.0%, 언론사 45.9% 등의 순이었으며, 취하 비율은 공공단체 50.7%, 기업체 50.0%, 개인 4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신청인 유형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1,919 (100)	530 (27.6)	182 (9.5)	200 (10.4)	63 (3.3)	17 (0.9)	927 (48.3)
국가기관	64 (100)	21 (32.8)	7 (10.9)	12 (18.8)	1 (1.6)		23 (35.9)
지자체	90 (100)	52 (57.8)	4 (4.4)	21 (23.3)		1 (1.1)	12 (13.3)
공공단체	67 (100)	15 (22.4)	1 (1.5)	17 (25.4)			34 (50.7)
일반단체	373 (100)	122 (32.7)	29 (7.8)	77 (20.6)	28 (7.5)		117 (31.4)
종교단체	110 (100)	55 (50.0)	22 (20.0)	12 (10.9)	2 (1.8)		19 (17.3)
기업체	390 (100)	105 (26.9)	22 (5.6)	56 (14.4)	12 (3.1)		195 (50.0)
언론사	74 (100)	34 (45.9)	11 (14.9)	7 (9.5)	2 (2.7)	1 (1.4)	19 (25.7)
교육기관	83 (100)	27 (32.5)	22 (26.5)	14 (16.9)			20 (24.1)
계	3,170 (100)	961 (30.3)	300 (9.5)	416 (13.1)	108 (3.4)	19 (0.6)	1,366 (43.1)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강원중재부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광주(65.6%), 대구(47.9%), 전북(38.2%), 충북(38.0%) 중재부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원과 광주중재부는 취하된 사건도 정정보도 등으로 피해가 구제되어 100%의 피해구제율을 기록하였다.

서울중재부의 전체 사건 조정성립률은 26.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의 대량 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조정성립률(24.3%)과 비교해서는 2.2% 상승하였다. 한편, 6개 지역중재부에서는 직권조정결정이 없었으며, 향후 적극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직권조정결정이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표 20]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구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서 울	2,266 (100)	601 (26.5)	261 (11.5)	308 (13.6)	80 (3.5)	5 (0.2)	1,011 (44.6)
부 산	110 (100)	19 (17.3)	2 (1.8)	3 (2.7)			86 (78.2)
대 구	73 (100)	35 (47.9)		8 (11.0)			30 (41.1)
광 주	163 (100)	107 (65.6)			14 (8.6)	4 (2.5)	38 (23.3)
대 전	66 (100)	23 (34.8)		18 (27.3)			25 (37.9)
경 기	183 (100)	60 (32.8)	15 (8.2)	33 (18.0)	7 (3.8)	2 (1.1)	66 (36.1)
강 원	15 (100)	11 (73.3)			2 (13.3)		2 (13.3)
충 북	50 (100)	19 (38.0)		8 (16.0)			23 (46.0)
전 북	55 (100)	21 (38.2)		2 (3.6)	1 (1.8)		31 (56.4)
경 남	145 (100)	53 (36.6)	19 (13.1)	24 (16.6)	4 (2.8)		45 (31.0)
제 주	44 (100)	12 (27.3)	3 (6.8)	12 (27.3)		8 (18.2)	9 (20.5)
계	3,170 (100)	961 (30.3)	300 (9.5)	416 (13.1)	108 (3.4)	19 (0.6)	1,366 (43.1)

* () 안의 숫자는 %

7.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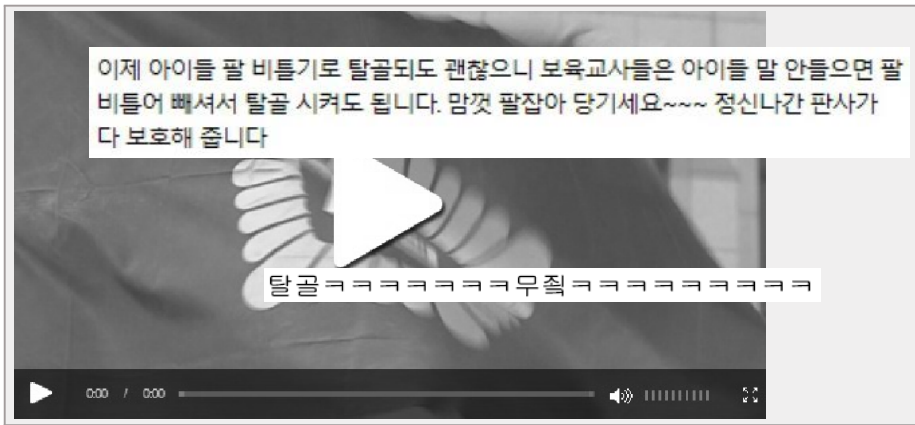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뉴스의 생산과정이나 소비방식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뉴스는 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히 전파되고 있어 일부 잘못된 기사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타 매체에 복제된 기사, 댓글 등을 조정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피해구제를 위한 합의 의사가 있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즉, 신청인이 복제기사 및 댓글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조정과정에서 인터넷 기사의 노출 제외 및 검색 차단, 기사의 수정·보완을 통해 정보통신망상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실무처리 지침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 보완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 례 |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1



G언론사는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원아의 팔꿈치를 고의적으로 탈구시킨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하였고, 이에 대한 댓글이 게재되어 신청인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심리결과 G언론사가 단정적인 표현을 기사에서 수정하고 댓글이 노출 및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2

H언론사는 특정 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보도하며 업계 관계자인 신청인이 발언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 및 보도하였고, 이 영상은 언론사 측 페이스북 및 포털을 통해 확산되었다.

심리결과 H언론사가 자체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에 게시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포털로 복제·전파된 영상 삭제에 협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 4 절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당사자 양쪽이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절차인 중재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으로 청구 자체가 미진하였다.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포털, IPTV 등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으로 중재사건 청구현황은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재신청은 2014년 11건, 2015년 26건, 2016년 13건으로 10여 건에 불과하였다.

일반적인 중재제도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발생 이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맺거나 그와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나, 언론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사전에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어 중재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된 경우 이를 매개한 포털에 대한 중재사건이 이어졌다. 그러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결과가 포털에 그대로 반영되는 추세여서 신청인이 별도로 포털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이는 중재건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2016년 중재사건의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건 중 명예훼손이 9건이고 재산상 손해가 4건이었으며, 청구권은 추후보도가 5건(38.5%)이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각각 4건(30.8%)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은 인터넷신문 9건(69.2%), 신문·잡지 4건(30.8%)의 순이었다. 한편, 처리결과는 모두 중재결정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재사건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16. 1. 1. ~ 2016. 12. 31.)

구 분 연 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청 구 명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16	명예훼손	9	2	2	5	
	재산상 손해	4	2	2		
	계	13	4	4	5	

[표 22] 중재사건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16.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계	신문·잡지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2016		13 (100)	4 (30.8)			9 (69.2)	

* () 안의 숫자는 %

[표 23] 중재사건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16		13	13				

사 례 | 중재

A인터넷신문은 B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되어 형사고발을 당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B단체는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15년 12월 23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 활동비를 부정 수급한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A인터넷신문과 사전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하고 추후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A인터넷신문은 추후보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후보도를 게재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제 5 절 평 가

2016년 위원회는 총 3,17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그 피해구제율은 72.3%를 기록하였다.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4년 2,931건, 2015년 3,319건으로 3년 연속 3천 건 안팎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 조정 및 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각각 84.6점, 77.1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권조정결정의 비율은 9.5%로 2015년(6.1%)에 비해 3.4%가 상승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위원회는 디지털 매체로 언론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보 통신망상에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 위원회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뉴스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급속도로 확산·전파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 결과가 원 기사가 전파된 타 매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 문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 언론사가 계약관계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위해 협조하는 이행방식을 병기함으로써 조정을 통해서 일괄적인 피해구제 및 피해확산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뉴미디어인 팟캐스트에 대해서 최초로 조정을 실시하였다(2016서울조정 1097·1098 사건, 피신청인은 미디어오늘 팟캐스트). 팟캐스트에 대해 언론중재법 상 명확한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할 중재부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는 그 영향력이 막대하고 운영주체가 언론사임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다.

한편, 신청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도 신청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재부 증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언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대비하여 새로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제 2 장 시 정 권 고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제도는 향후 유사한 법익 침해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효과를 가지며, 개인의 인격권을 포함한 다양한 법익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심의대상 매체 확대 및 심의모니터링 제도 개선

위원회는 인터넷신문 등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2016년 심의대상 인터넷신문 매체수를 1,0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였다.

심의모니터링 제도도 개선하였다. 기존의 채택모니터 대신 상근 시정권고 전문심의위원 8명을 채용하여 사무처 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인터넷신문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였다.

2.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위원회는 2016년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두 차례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별 외 인종·종교·질병·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최근 제·개정된 법률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표금지기준의 예외요건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심의기준을 적용해 시정권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언론보도로 인한 다양한 범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총 2,200여 개 매체를 심의해 전년도 438건보다 474건 증가한 912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 유형별로는 고소·고발 보도, 북한 이탈주민 신원공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2015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4. 침해 유형별 분석

시정권고 내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고소·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고소·고발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262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173건, 19.0%)와 개인의 사생활 및 초상, 성명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134건, 14.7%)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살자의 신원 노출, 자살 방법 묘사 등 자살 관련 보도 124건(13.6%), 북한 이탈주민 신원공개 금지를 위반한 보도 75건(8.2%),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한 보도 43건(4.7%), 마약 및 약물의 사용방법 및 구입방법 등을 공개한 보도 28건(3.1%) 등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2016년도에 단순 고소·고발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유명 연예인의 성적 문제 등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225개 매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독자들은 피고소인인 연예인이 성폭행 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후에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침해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마약 및 약물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2016년에는 28건으로 전년(135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위반으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6년 43건으로 2015년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2016년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신원을 공개한 75개 매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북한 이탈주민 신원공개와 관련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 중 한 인터넷신문사는 위원회가 시정권고 업무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다(2016. 7.). 해당 언론사는 탈북 종업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보도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북한 이탈주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한 것은 맞지만, 동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재심대상보도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표 2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도	침해 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재난 보도	음란 전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악물 보도	충격 혐오감	성 관련 보도		여론 조사
2014	302 (100)	25 (8.3)	16 (5.3)			5 (1.7)			29 (9.6)	9 (3.0)	51 (16.9)	73 (24.2)	75 (24.8)	13 (4.3)	4 (1.3)	2 (0.7)	
2015	438 (100)	92 (21.0)	5 (1.1)		1 (0.2)		10 (2.3)				16 (3.7)	62 (14.2)	135 (30.8)	14 (3.2)	8 (1.8)		95 (21.7)
2016	912 (100)	134 (14.7)	43 (4.7)	4 (0.4)	262 (28.7)	20 (2.2)	4 (0.4)	75 (8.2)		4 (0.4)	22 (2.4)	124 (13.6)	28 (3.1)	14 (1.5)	5 (0.5)		173 (19.0)

*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적 법익 침해 중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4년 25건, 2015년 92건, 2016년 134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2016년 사생활 침해로 시정을 권고했던 보도 중 공인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몰래 촬영·보도하거나 소방서 등의 구조 활동 보도를 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택에서 잠옷 차림으로 지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여러 언론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피촬영자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의 중심에 놓여 있는 공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보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관련자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루머를 보도하면서 모 배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여 모 배우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아래 [사례] 참조)를 들 수 있다. 위원회는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부정적 루머와 관련된 과거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 례 | 사생활 침해



* 모 배우의 과거 사진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 원 보도내용에는 보도 당사자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나.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2016년도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위반으로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건은 43건으로, 2014년도(16건), 2015년도(5건)에 비해 늘어났다.

2016년 위원회가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위반으로 시정을 권고했던 보도에는 부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초상 또는 성명, 주택 소재지 등을 공개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사례,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의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한 사례들이 있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한 사례로 보아 시정을 권고하였다. 다만, 흉악범이나 공적 인물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적용하였다.

사 례 | 피의자 신원공개

(전략)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4일 이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고 이양의 아버지 000(00)과 계모 백모(41)씨에 대해 아동 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000과 백씨는 작년 3월 17일 5시간 동안 이양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집 작은방에 방치한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 (이하 생략)

* ‘0’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다. 고소·고발 보도

2016년 단순 고소·고발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62건으로 2014년 12월,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해당조항을 신설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유명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최소한 피고소인의 입장을 들어야 하며, 이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은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례 | 고소·고발 보도

성폭행 혐의 피소 000, 소속사 “사실 확인 중”

배우 000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는 사실을 확인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000 소속사 0000는 23일 “현재 000의 소식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입장은 이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0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000은 올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A씨(30대·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달 22일 검찰은 분당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 ‘0’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라. 북한 이탈주민 신원 공개

2016년 한 해 동안 북한 이탈주민의 신원을 공개해 시정을 권고 받은 건수는 75건(8.2%)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차남의 초상 및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한 보도와 국제수학을림피아드에 참가했던 북한 이탈주민의 성명 과 나이를 공개한 보도 등이다. 특히 탈북자가 고위 공무원 등 공적 인물에 해당할지라도 그의 가족 구성원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

며, 북한 이탈주민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변 상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사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 례 | 북한 이탈주민 신원 공개



* 원 보도내용에는 초상이 노출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초상을 가림

마. 자살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은 2014년 73건, 2015년 62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2016년 124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자살 방법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사는 자살 관련 보도에서 주의를 기울여 보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정권고 사례로는 안산에서 일어난 동반 자살 사건을 전하면서 자살 방법 및 자살에 사용된 도구에 대해 상세히 묘사한 77건의 보도가 있다.

또,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직업, 나이, 직급, 근무지,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하고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자살 동기를 단정할 경우 자살자나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살자 또는 자살자의 유족의 신원을 공개한 보도,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일지라도 자살 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 례 | 자살 방법 상세 묘사

(전략) 5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사무실에서 A(26.여)씨 등 남자 3명, 여자 1명이 사무실 안에 OO OO용기에 OO를 연결한 뒤 OOOO를 뒤집어 쓴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찾아냈다. (이하 생략)

* 'O'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사 례 | 자살 동기 단정

2016년 07월 25일 월요일 015면 사회

시청 공무원, 옥상서 목매 숨져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청 옥상서 자살 충격

시청이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전보발령 인사를 단행한 다음날 인사에 불만을 품은 시 공무원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20분쯤 시청 출장소 직원 K 모(52세) 씨가 시청 본관 3층 옥상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K씨는 이날 시청 총무과를 찾아 지난 21일 단행된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뒤 사표를 내고 옥상으로 올라가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쯤 근무처인 출장소로 출근하지 않고 본청으로 와 사표를 제출하고 나간 후 10시20분쯤 본관 3층 옥

상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방시절관리 8급인 K씨는 동네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이번 전보인사에서 출장소로 발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K씨가 타고 온 차량과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K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바.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및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거나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전년도 135건에서 2016년에는 28건으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마약류 관련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권고가 언론의 보도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마약류 관련 대표적 사례는 신종 마약 밀반입을 보도하면서 마약의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등을 묘사한 언론에 시정을 권고한 사례이다.

사 례 |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담배에 몇 방울 뿌려 피우는 신종마약 ‘OO OO’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H씨는 손세정제로 위장한 ‘OO OO’을 국제우편으로 이씨에게 부쳤다. 이씨는 경기도 고양 자택에서 이를 Om씩 안약통에 나눠 담은 뒤 OO만~OO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로 팔았다. 이씨 일당은 유학생과 외국인이 즐겨 찾는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OO OO’을 권하고 SNS에 판매 게시물을 올렸다. 구매자를 섭외하면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다단계식 영업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판을 세우고 사업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에 유통된 ‘OO OO’은 XLR-11 성분 합성 대마계열 마약이다. 2014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담배에 OO 방울쯤 떨어뜨려 간단하게 피울 수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 ‘O’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사. 기사형 광고

2016년 한 해 동안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173건으로 2015년 95건에 비해 80%이상 증가했다. 위원회는 2014년 12월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사형 광고 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3월부터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를 실시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는 ‘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례 | 기사형 광고



* 원 보도내용에는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5. 매체 유형별 분석

2016년 한 해 동안의 총 912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698건(7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117건(12.8%), 뉴스통신 69건(7.6%), 방송 17건(1.9%), 주간지 8건(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4 1. 1. ~ 2016. 12. 31.)

구 분 연 도	총 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4	302 (100)	47 (15.6)	37 (12.3)	4 (1.3)		36 (11.9)	178 (58.9)	
2015	438 (100)	35 (8.0)	49 (11.2)	10 (2.3)	3 (0.7)	44 (10.0)	297 (67.8)	
2016	912 (100)	54 (5.9)	63 (6.9)	8 (0.9)	3 (0.3)	69 (7.6)	698 (76.5)	17 (1.9)

* () 안의 숫자는 %

인터넷신문의 범의 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은 2014년 58.9%, 2015년 67.8%, 2016년 76.5%로 시정권고 건수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2016년에 심의대상 인터넷신문을 기존 1,000여 개에서 2,000여 개로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송 보도에 대해서도 17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는 자살 방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11건), 연예인 사생활 침해 보도(3건), 단순 고소고발 사건 보도, 북한 이탈주민 신원공개 보도, 범죄수법 묘사 보도(각 1건)에 대한 것이다.

제3절 평 가

위원회는 인터넷신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심의대상 인터넷신문 매체수를 기존 1,000여 개에서 2,000여 개로 확대했다. 또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채택모니터 대신 상근 시정권고 전문심의위원을 채용하여 인터넷신문 등을 중점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2016년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912건으

로 전년 43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201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인종·종교·질병·장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과 피의자 신상정보 공표 금지 기준의 예외요건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이는 위원회가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익침해를 심의하고 보다 명확한 심의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6년 시정권고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보면, 개인적 법익 침해에는 단순 고소·고발 보도 위반 유형이 262건으로 가장 많고, 사생활 침해 보도 134건, 북한 이탈주민 신원공개 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원공개(43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20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 광고 173건, 자살 관련 보도 124건 순으로 많았으며, 마약 및 약물보도(28건), 범죄수법 상세묘사(22건)도 주목할 만한 침해사례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매체 유형별로는 일간지 등 지면매체뿐 아니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그리고 방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론매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과 방송에 대해 시정권고한 점이 눈에 띈다. 매년 새로 등록하는 인터넷 신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시정권고 대상매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 포털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털 등을 통해 각종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가 쉽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이를 시정권고 대상 매체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 3 장

선거기사심의

제 1 절 개 요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심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비상설기구인 선심위의 운영기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부터,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되어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201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보궐선거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없는 때에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

외적으로 재보궐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선심위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한다.

선심위는 해당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위반 수준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하고 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가. 자체심의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선거기사 심의원 및 실무팀이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 해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선정하여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선심위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건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정한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이행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정기간행물 등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선심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심위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이행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

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선심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6년 4월 13일 / 선심위 운영기간(2015. 12. 14. ~ 2016. 5. 13.)) 동안 자체심의 55건, 시정요구심의 21건 등 총 76건을 의결하였다.

가. 자체심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는 55건의 자체심의 결정을 내렸다. 자체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의가 33건(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고가 21건(38.2%), 권고가 1건(1.8%)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에 대한 제재가 39건(70.9%), 기고 및 칼럼 게재로 인한 제재조치가 9건(16.4%), 광고 제한 위반 4건(7.3%),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3건(5.5%)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가장 많은 31건(56.4%)이었고, 이어 지역주간지 19건(34.5%), 중앙일간지 4건(7.3%), 종합주간지 1건(1.8%) 순이었다.

[표 2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15. 12. 14. ~ 2016. 5. 13.)

구분		위반유형					결정내용			
간별	계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기고 등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 신문	중앙	4	1	1	2			4		
	지역	31	26		1	4	18	13		
종합주간지		1		1				1		
지역주간지		19	12	1	1	5	3	15	1	
월간지										
뉴스통신										
총계		55	39	3	4	9	0	21	33	1
		(100.0)	(70.9)	(5.5)	(7.3)	(16.4)	(0.0)	(38.2)	(60.0)	(1.8)

* () 안의 숫자는 %

나. 시정요구심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에 총 21건의 시정요구가 접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12건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의결되었다.

결정유형별로는 주의가 4건, 경고결정문 게재 3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 경고 1건, 권고 2건이었다. 시정요구가 접수된 사건 중 4건은 취하되었으며 5건은 기각되었다. 선심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3건으로 모두 기각되었다.

지역주간지에 대한 시정요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스통신 5건, 중앙일간지 3건, 종합주간지 1건이었다.

[표 2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2015. 12. 14. ~ 2016. 5. 13.)

구 분		결 정 내 용								
간 별	계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각하
일간 신문	3						1	1	1	
종합주간지	1			1						
지역주간지	12	2		2		3	1	1	3	
월간지										
뉴스통신	5				1	1		2	1	
총 계	21 (100)	2 (9.5)	0 (0.0)	3 (14.3)	1 (4.8)	4 (19.0)	2 (9.5)	4 (19.0)	5 (23.8)	0 (0.0)

* () 안의 숫자는 %

사 례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 조치)

“부시장때 느꼈던 문제들
직접 해결하기 위해 출마”

이재준 제2부시장 수원갑 출마
“엄 시장 시정철학에 보탬 보람”



내년 총선에서 수원갑(장안구)지역에 출마의사를 밝힌 이재준(사진)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미래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퇴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할 기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행복할 시간이었다”며 “광역시장의 시정철학에 미흡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보람이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는 전국 최대, 최고의 도시로 도시정책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회고한 이 부시장은 “이같은 도시 프로젝트를 수원시의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시장을 통해 배운 경험과 역량을 또 다른 분야의 길에 쏟아 붓고자 한다”며 “수원시장을 떠나지만 수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등 퇴임 뒤 행로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선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을

경험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공무원 신분으로 제한적이라고 느껴 문제를 본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용기를 냈다”고 답했다.

또 출마 소식을 묻는 질문에 “전통적 민주당”이라고 답해 정당 예정인 안철수 신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부시장 재직 성과로는 군공항 이전 확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계획 수립, 마을만들기-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분쟁상담센터 설립 등을 꼽았다.

이 부시장은 다음달 4일 퇴임 이후 같은달 10일 수원시장 경험과 비전 등을 담은 저서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의 출판기념회로 퇴임 후 첫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공과 박사 출신인 이 부시장은 협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일태영 수원시장의 요청을 받아 2011년 2월부터 수원시 제2부시장을 수행해왔다.

백종대기자

※ 중부일보는 위 기사를 비롯하여 6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는 거의 보도하지 않아 경고 결정을 받았다.

사 례 | 칼럼 및 기고 등 게재금지 위반(주의 조치)

독자 투고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에 4개역은 추진되어야 한다



박인균
세누리당 의정부예비후보

우선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로 전철 7호선 양주 유치가 가시화된 데 대해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예견하고 본인이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언론을 통해 밝혔사피 이번에 예타 통과된 사업은 명백히 양주노선이며 의정부시민으로서의 정말 받아드리기 어려운 노선이다.

이러한 점은 침부 노선도를 보면 삼척동자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으로, 양주로 가는 전철이 어쩔 수 없이 의정부를 지나니 시혜 베풀 듯 억 하나 쟁겨 준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본인이 오랫동안 기

회 날 때마다 밝혀 왔사피, 적어도 수도서울의 한수이북 핵심 위성 도시이자 도시화가 성숙된 인구 44만의 중견도시인 의정부의 전철은 한수이남 여러 도시에서 그러하듯 철도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2001년에 인터넷청원서명운동으로 시작되어 8년 전에는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벌였을 만큼 의정부 지역 연장을 위해 의정부 지역에서 시발된 본 사업은 당연히 의정부 시민의 바람과 의정부 지역의 필요성을 우선시하여 적어도 4개역(장암주공4거리, 탑석, 민락2지구, 성모병원 등)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정부를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일이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뭘 했는지, 본인이 꾸준히 귀뜸해 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적용해 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 보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특례조항으로 선

정된 사업은 착수도 공사도 훨씬 빨라, 본인이 지난 11월 보도자료 말미에 언급한 금강~보령법 도로 공사도 당시 바로 착공하여 벌써 완공하였고 내일 준공, 통수식을 하기로 했다가 북항의 핵도발로 22일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본인은 이번 20대 국회에 꼭 입성하여, 의정부와 양주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반드시, 더 신속하게 실현하고자 한다. 끝으로 앞으로 차차 노선을 바꾸고 역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노선과 의정부 노선은 사실상 완전히 별개로, 전례도 없고 현실을 도외시한 순진한 생각이며, 전철노선은 시외버스노선도 마을버스노선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 주고 싶다. 자숙을 해야 할 사안을 놓고 나날이 부담이 될 자화자찬 현수막을 당의 이름으로 지역 곳곳에 게첩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핵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아시아일보는 특정 예비후보의 칼럼을 게재하여 주의 조치되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사 례 | 시정요구에 따른 정정보도 게재 사례(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문)

※ 성동신문은 성동구 보훈 관련 단체의 질의에 대한 지역구 후보자들의 답변을 보도하면서 홍익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만 관심을 갖고 답변을 보내왔으며 이를 보도하였다. 이에 흥 후보는 답변 기한에 맞추어 송부하였음에도 성동신문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하였다. 사실 확인 결과 성동신문측이 흥 후보의 답변 메일을 확인 못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홍익표의원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8년 4월 6일자 3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성동구 보훈위원 8개 단체 질의에 대한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 국민의당 시정신 후보의 답변을 게재하면서 "답변을 보내 온 후보는 중구성동구에 출마한 시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와 국민의당 시정신 후보 등 2명만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보내왔다"고 보도한 바 있음

나.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홍익표 당선자는 "4.13 총선에 따른 국가보훈처에 관한 권익제안에 관한 홍익표후보의 입장"을 요청기일에 맞추어 본지가 요청한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홍익표 의원은 해당 질의에 대해 "국가유공자분변에 대한 여우

를 강조하고, 잠전국 보훈외교, 제1군인 지원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보훈가족들의 여유심화와 성동구보훈회관련법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2016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16년 재보궐선거는 대구 달서구(기초단체장), 서울 강서구(광역의원) 등 총 5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구]

기초단체장(8)	대구 달서구, 광주 동구, 경기 양주시, 경기 구리시, 충북 진천군,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경남 거창군
광역의원(17)	서울 강서구제2, 서울 관악구제3, 대구 수성구제1, 대구 달서구제5, 인천 계양구제1, 경기 수원시제5, 경기 성남시제4, 경기 성남시제7, 경기 안양시제2, 경기 양주시제2, 경기 화성시제3, 경기 군포시제1, 전북 전주시제2, 전북 익산시제4, 경북 구미시제3, 경남 양산시제3, 제주 제주시제2
기초의원(26)	서울 중구가, 서울 동대문구마, 서울 서대문구마, 서울 관악구나, 서울 강남구아, 부산 해운대구가, 부산 사하구라, 부산 연제구다, 대구 동구다, 인천 남동구라, 경기 부천시바, 경기 고양시나, 경기 이천시가, 경기 김포시라, 충북 옥천군가, 충남 아산시나, 충남 논산시라, 충남 당진시가, 전북 전주시라, 전남 여수시라, 전남 고흥군나, 경북 성주군가, 경남 창원시나, 경남 김해시라, 경남 진주시다, 경남 양산시가

선심위는 2016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운영기간(2016. 2. 13. ~ 2016. 5. 13.) 동안 자체심의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자체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고, 주의, 권고가 각각 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1건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2건, 지역주간지가 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표 28] 2016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16. 2. 13. ~ 2016. 5. 13.)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기고 등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 신문	중앙								
	지역	2	2				1	1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1	1						1
월간지									
뉴스통신									
총 계		3 (100.0)	2 (66.7)	1 (33.3)	0 (0.0)	0 (0.0)	1 (33.3)	1 (33.3)	1 (33.3)

* () 안의 숫자는 %

제3절 평 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제재조치 가운데 ‘사과문 게재’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2015. 7. 30. 2013헌가8)됨에 따라 사과문 게재를 제재조치로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는 사실관계에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허위 사실이 보도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적용하였으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정보도를 명할 수는 없지만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적용하였다. 또 같은 언론사가 동일한 문제로 다시 심의기준을 위반할 경우 더 강한 제재 결정을 하였다. 선심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390개 언론사에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포함한 ‘선거기사심의편람’을 배포해 선거기사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선거기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기사 심의원이 작성한 일일 업무일지를 실무팀과 공유하도록 하였고 심의기준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향후 심의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체심의 제재 건수는 55건으로 이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심위 심의 건수(130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주요 선거보도 위반 유형이었던 여론조사 보도 위반에 대한 제재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또 제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과 공천 지연으로 본격적인 후보 간 경쟁이 늦게 시작된 것도 제재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 보인다.

선심위에 접수된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21건이었다. 이 중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이 내려진 언론사는 3곳이었으나 2개 매체는 결정문 수령 후 신문을 발행하지 않아 위원회는 제재조치 미 이행 내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조치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다가 자체 종결하였다. 선심위 제재조치 중 정정보도문 게재 외의 조치들은 현행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조치 시행 시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법적 명확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헌결정을 받은 사과문 게재 조치 삭제와 함께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법률상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2016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선심위 제도에 있어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만큼 중요한 문제가 선심위의 상설화이다. 선거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수시로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별로 선심위가 각각 설치·운영되어 각 선심위별로 심의기준 적용과 심의대상 기사에 대한 해석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 심의위원은 몇 달간 심의를 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판단에 지식과 노하우를 쌓게 되는데 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한 차례 임기로 끝나고 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선거 관련 기사가 상시 보도되고 있음에도 선심위가 설치되기 전에는 심의를 할 수 없어 피해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같은 기사 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된다는 점도 고려, 매체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심위는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공연히 비하 또는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제110조 제2항)을 반영하여 객관성 및 사실보도 조항을 위반하는 기사의 유형으로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기사’를 포함하도록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심의기준 제6조 제8호). 또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2015. 12.)을 반영하여 여론조사보도 관련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심의기준 제8조).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 1 장

언론피해 상담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언론분쟁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을 받은 민원인이 조정신청을 원할 경우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상담부터 조정신청 접수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나 방문상담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이나 실시간 채팅창 등을 통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총 2,78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2016년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원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에 복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상담이용자에게 적절히 제시해 복제·전파 기사로 인한 피해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생 뉴스플랫폼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 대한 상담방법을 상담실무자 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인터넷 미디어 표준상담사례’를 마련, 디지털 시대에 따른 매체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새로운 유형

의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016년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합만족도 점수는 92.6점으로,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용자의 항목별(상담자의 적극성, 친절성, 신뢰성, 도움정도 등) 만족도 역시 고르게 90점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위원회가 제공하는 상담이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언론피해 상담 모습]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상담신청 유형

2016년 전체 상담 건수는 2,780건으로 2015년 2,545건에 비해 235건(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한 상담이 2,211건(79.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 197건(7.1%), 국민신문고 123건(4.4%), 인터넷 게시판 91건(3.3%), 인터넷 실시간 상담 44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담 신청의 증가에 따라 2016년 5월부터는 '기타'에 포함되었던 국민신문고를 분리하여 별도로 집계했다.

인터넷 게시판 및 이메일을 활용한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담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한 ‘활자’ 상담보다는 ‘음성’ 또는 ‘대면’을 이용한 대인(對人) 상담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9] 상담신청 유형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 신문고	기타
2014	2,217 (100)	1,838 (82.9)	181 (8.2)	65 (2.9)	4 (0.2)	49 (2.2)	-	80 (3.6)
2015	2,545 (100)	2,117 (83.2)	190 (7.5)	67 (2.6)	48 (1.9)	35 (1.4)	-	88 (3.5)
2016	2,780 (100)	2,211 (79.5)	197 (7.1)	44 (1.6)	91 (3.3)	52 (1.9)	123 (4.4)	62 (2.2)

* () 안의 숫자는 %

* 2016년 5월부터 ‘기타’에서 ‘국민신문고’를 분리해 집계

2. 상담 처리결과

2016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은 조정절차 안내로 처리된 건수가 2,464건(67.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상담 예정 526건(14.5%), 타 기관 안내 393건(10.8%), 법적절차 안내 128건(3.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타 기관 안내 항목은 전년 대비 86건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신청인들이 위원회를 언론 및 언론보도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30] 상담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처리결과 건수	상담 처리결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 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2014	2,217	2,605 (100)	2,049 (78.7)	188 (7.2)	157 (6.0)	133 (5.1)	64 (2.5)	14 (0.5)
2015	2,545	3,291 (100)	2,225 (67.6)	140 (4.3)	477 (14.5)	307 (9.3)	67 (2.0)	75 (2.3)
2016	2,780	3,639 (100)	2,464 (67.7)	128 (3.5)	526 (14.5)	393 (10.8)	99 (2.7)	29 (0.8)

* () 안의 숫자는 %

* 상담 처리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 처리결과의 합계가 불일치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6년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을 보면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이 2,198건(79.1%)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가 195건(7.0%), ‘사생활 침해’ 65건(2.3%), ‘재산상 손해’ 54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여전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언론보도가 사생활이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에도 위원회의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기타 인격권 등 각종 권익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기타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피해도 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왔던 결과로 해석된다.

[표 31]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 도	구 분 상담건수	피 해 유 형				
		명예훼손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4	2,217 (100)	1,831 (82.6)	163 (7.4)	30 (1.4)	58 (2.6)	135 (6.1)
2015	2,545 (100)	1,876 (73.7)	176 (6.9)	55 (2.2)	48 (1.9)	390 (15.3)
2016	2,780 (100)	2,198 (79.1)	195 (7.0)	65 (2.3)	54 (1.9)	268 (9.6)

* () 안의 숫자는 %

4. 상담매체 유형

상담 대상 매체로는 인터넷신문이 1,223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754건(19.7%), 일간신문 471건(12.3%), 인터넷뉴스서비스 294건(7.7%), 뉴스통신 215건(5.6%), 주간신문 182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총 상담 건수 중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건수의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으로 ‘취재·편집 인력 5인 이상 상시 고용’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2015헌마1206, 2016. 10. 27. 선고)이 선고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매체 수 증가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상담

도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의 보도로 인한 피해 상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의 특성과 양태를 고려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 기사가 순식간에 전파·복제되어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 기사 댓글 및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통해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팟캐스트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대한 상담도 있었으며, 언론사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대한 상담은 처음으로 조정심리까지 연결되었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상담건수도 전년 대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32] 상담매체 유형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매체 건수	상담 매체유형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 미디어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불명
2014	2,217	2,464 (100)	479 (19.4)	124 (5.0)	517 (21.0)	13 (0.5)	143 (5.8)	761 (30.9)		53 (2.2)		374 (15.2)
2015	2,545	3,064 (100)	468 (15.3)	124 (4.0)	538 (17.6)	18 (0.6)	162 (5.3)	974 (31.8)		115 (3.8)	6 (0.2)	659 (21.5)
2016	2,780	3,821 (100)	471 (12.3)	182 (4.8)	754 (19.7)	11 (0.3)	215 (5.6)	1,223 (32.0)	1 (0.0)	294 (7.7)	16 (0.4)	670 (17.5)

*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5. 상담신청인 유형

2016년 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상담신청인을 유형별로 보자면 개인이 1,856건 (66.8%), 회사 336건(12.1%), 일반단체 244건(8.8%), 지자체 및 공공단체 168건(6.0%), 국가기관 72건(2.6%), 종교단체 54건(1.9%), 교육기관 50건(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상담신청인 유형 분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3] 상담신청인 유형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상담신청인 유형						
		개 인	국가 기관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14	2,217 (100)	1,372 (61.9)	60 (2.7)	217 (9.8)	311 (14.0)	58 (2.6)	53 (2.4)	146 (6.6)
2015	2,545 (100)	1,655 (65.0)	49 (1.9)	238 (9.4)	369 (14.5)	60 (2.4)	24 (0.9)	150 (5.9)
2016	2,780 (100)	1,856 (66.8)	72 (2.6)	244 (8.8)	336 (12.1)	50 (1.8)	54 (1.9)	168 (6.0)

* () 안의 숫자는 %

6. 상담대상 유형

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복제기사, 댓글 등에 대한 상담건수도 집계하고 있다. 2016년 위원회에 상담 신청한 상담대상 유형으로는 원 기사 2,550건(80.5%), 매개기사 215건(6.8%), 복제기사 90건(2.8%), 댓글 80건(2.5%), 유사미디어 29건(0.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매개기사, 복제기사, 댓글, 유사미디어로 인한 상담 건수는 2015년 193건에서 2016년 414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상담신청인들이 원 기사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하거나 복제한 기사, 나아가 댓글에 대해서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위원회는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표준상담사례를 마련, 상담신청인이 원 기사의 복제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정심리 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단계에서부터 안내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16년 5월부터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 팟캐스트, 1인 미디어 등 이른바 ‘유사미디어’를 상대로 한 상담건수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유사미디어’에 대한 상담이 29건 있었다. 디지털 매체 환경의 진화로 ‘유사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뉴스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상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 상담대상 유형

(2015. 7.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상담대상 건수	상담대상					
			원기사	매개 기사	댓글	복제 기사	유사 미디어	기타
2015	1,357	1,545 (100)	1,205 (78.0)	93 (6.0)	49 (3.2)	51 (3.3)		147 (9.5)
2016	2,780	3,166 (100)	2,550 (80.5)	215 (6.8)	80 (2.5)	90 (2.8)	29 (0.9)	202 (6.4)

* () 안의 숫자는 %
 * 2016년 5월부터 '유사미디어' 집계
 * 상담대상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합계가 불일치

7. 상담내용 유형

2016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정정 및 반론보도 관련 상담은 2,054건(51.8%), 손해배상 1,030건(26.0%),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등 322건(8.1%), 형사고소 134건(3.4%), 추후보도 99건(2.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등에 대한 상담이 2014년 141건, 2015년 210건, 2016년 322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4월부터는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등'에 복제기사나 댓글의 삭제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구제수단 상담 현황을 반영했다. 위원회를 통해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이 가능한 지 문의하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쉽게 검색되고 전파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언론보도 피해의 경우 기존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구제수단에 더해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구제수단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표 35] 상담내용 유형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상담 내용 건수	상담내용 유형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금지 청구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등	강제 집행절차	형사 고소	기타
2014	2,217	2,959 (100)	1,740 (58.8)	80 (2.7)	856 (28.9)	11 (0.4)	141 (4.8)		31 (1.0)	100 (3.4)
2015	2,545	3,284 (100)	1,799 (54.8)	89 (2.7)	757 (23.1)	30 (0.9)	210 (6.4)	1 (0.0)	120 (3.7)	278 (8.5)
2016	2,780	3,969 (100)	2,054 (51.8)	99 (2.5)	1,030 (26.0)	30 (0.8)	322 (8.1)	5 (0.1)	134 (3.4)	295 (7.4)

* () 안의 숫자는 %
 * 상담내용 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내용 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 2016년 4월부터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등'에 '복제기사·댓글 삭제' 포함

제3절 평 가

2016년 이용만족도 조사 중 상담 관련 결과를 보면, 전년도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던 ‘문제해결에 도움’ 항목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2015년 87.5점 / 2016년 90.6점). 이는 위원회 상담실무자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상담신청인의 의견과 주장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른 다양한 언론보도 피해 유형을 숙지하고 이에 적합한 언론피해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016년 전년대비 235건(9.2%) 많은 총 2,780건의 상담신청을 처리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상담건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상담매체와 상담대상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전통미디어는 물론이고, 포털과 같은 뉴스플랫폼을 통한 매개기사로 인한 피해 상담, 팟캐스트와 같은 유사미디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원하는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같은 종전의 피해구제수단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잘못된 기사가 노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는 상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급변과 이에 따른 언론 소비 형태의 변화에 따라 피해의 유형이나 구제수단 역시 달라지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언론조정신청서 작성례를 개편해 ‘댓글 및 복제기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조정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미디어에 관한 표준상담사례를 마련하여 원 기사뿐만 아니라 이의 복제나 전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다양한 피해양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적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제 1 절 개 요

2016년 위원회는 언론중재아카데미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교육수강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교육콘텐츠의 질적·양적 개선을 꾀했다.

언론중재아카데미는 크게 분쟁해결 전문연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등 세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에서는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과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등을 보완하여 더 많은 일반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인 워크숍을 총 4회 개최하여 위원회의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언론의 법적 책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언론인 워크숍에 참여한 현직 언론인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면서 언론현장의 경험과 요구를 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은 매년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263건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이 이루어져 전년보다 교육실시 횟수가 늘었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관심까지 더해져 교육실시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반영해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종일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했으며,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운영을 방학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중 실시해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2016년 언론중재아카데미의 교육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16년 총 437회 실시, 18,031명 교육 참가라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는 종전 최고 실적으로 기록됐던 2015년 391회 실시, 12,875명 교육 참가의 수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표 36] 2016년도 교육 실시현황

(2016. 1. 1. ~ 12. 31.)

구 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분쟁해결 전문연수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계
언론인	38	6		44
공무원 등	국가기관/지자체	35	4	39
	교사/교직원	88	8	96
	군/경/소방관	37	4	41
	공공기관/공기업	7	5	12
(예비)법조인	4	2		6
기업 임직원	8	5		13
학생	대학생	21	6	27
	중고생	23		89
	초등학생	2		37
일반인		7		7
기타		1		1
계	263	48	126	43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2016년 위원회는 총 263회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등 167회, 학생 46회, 언론인 38회, 기업 임직원 8회, (예비) 법조인 4회 순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에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년도 105회에 비해 62회 (159%) 증가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대학, 중앙소방학교 등과 같이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군/경/소방관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 등이 언론보도의 영향력과 피해 발생 시 그 심각성 등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위원회 교육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위원회 조정·중재제도에 관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7]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도	대상	언론인	공무원 등	(예비) 법조인	기업 임직원	학생	일반인	기타	계
2014		29 (628)	49 (3,307)	3 (97)	19 (577)	37 (1,543)	1 (14)	1 (50)	139 (6,216)
2015		61 (1,597)	105 (6,255)	4 (58)	10 (657)	74 (4,293)	1 (15)		255 (12,875)
2016		38 (1,250)	167 (10,723)	4 (47)	8 (160)	46 (2,335)			263 (14,515)

* ()의 숫자는 교육인원

2. 분쟁해결 전문연수

위원회는 분쟁해결 전문연수 프로그램의 수강을 원하는 교육수강자들이 자신들의 수준과 선호에 맞게 교육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에 따라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각각 교육 과정을 세분화하고, 시간에 따라서는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은 야간에,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은 주간에 각각 개설했다. 특히 갈등해결 과정을 야간에 실시함으로써 평소 갈등관리 및 분쟁해결에 관심은 있었으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참석하기 어려웠던 일반인들의 참여를 대폭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공무원, 교원, 대학생, 언론인,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연수를 실시하면서, 각각의 교육대상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48회의 분쟁해결 전문연수를 실시했다. 기관위탁 연수, 지역언론인 워크숍, 교원연수 순으로 수강인원이 많았으며, 교육 수강 후 이수증을 수여받은 인원은 1,195명이었다.

가.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은 효과적인 언론홍보 방안 습득, 언론 대응능력 함양 및 급변하는 언론환경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업 또는 기관의 홍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춰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을 나누어 운영했다. 일반 과정은 기본적인 언론홍보 방안(보도자료 작성 실습,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퍼블리시티 전략 등)에, 심화 과정은 언론 대응역량 강화(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졌다.

2016년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은 전년도 4회의 2배가 넘는 9회를 실시했고, 13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은 교육생들이 자신들의 업무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언론홍보 방안, 조정·중재 기법 등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달라진 언론환경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주제를 선정해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매 교육 시마다 언론홍보의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언론보도로 인한 갈등과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교육함으로써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언론대응 및 홍보 과정 실시현황]

(2016. 1. 1. ~ 2016.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비고
제1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3. 16. ~ 3. 17.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19명	일반
제2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3. 23. ~ 3. 24.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21명	심화
제3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6. 8. ~ 6. 9.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14명	일반
제4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6. 15. ~ 6. 16.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15명	심화
제5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0. 5. ~ 10. 6.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16명	일반
제6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0. 12. ~ 10. 13.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10명	심화
제7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0. 25.	광주 중소기업 임직원 및 소상공인	16명	일반
제8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1. 9. ~ 11. 10.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10명	일반
제9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1. 16. ~ 11. 17.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10명	심화

나.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위원회는 ADR기구 임직원, 상담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갈등해결에 관심 있는 일반인까지도 교육 대상으로 삼아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했다.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역시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과 동일하게 교육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을 나눠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을 야간에 개설해, 위원회 갈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악성 민원인 대응 및 상담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상담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사례를 재구성해 교육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주제로 조별 토론과 역할연기(role-play) 활동을 해보도록 유도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을 교육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교육 수강생들의 교육 참여도가 높아졌음은 물론이고 갈등의 발생과 전개과정,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실시현황]

(2016. 1. 1. ~ 2016.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비고
제1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4. 25. / 27./ 29.	일반인	23명	일반
제2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5. 10. / 12.	"	23명	심화
제3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5. 17. / 19.	"	21명	심화
제4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6. 22. / 24.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30명	일반
제5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9. 19. / 21./ 23.	일반인	20명	일반
제6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9. 28. / 30.	"	18명	일반
제7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10. 10. / 12. / 14.	"	26명	일반
제8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10. 19. / 21.	"	20명	심화

다. 분야별 연수

1) 공무원·공공기관 연수

공공갈등과 분쟁해결, 갈등 위기상황 하의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다. 위원회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공보담당자 등이 다양한 공공갈등 상황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 분야 전문가, 분쟁해결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섭

외해 밀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으로 위원회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공공행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연수 실시현황]

(2016. 1. 1. ~ 2016.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공무원 연수	4. 7. ~ 4. 8.	서울특별시 공무원	24명
제2차 공무원 연수	4. 29.	전남지방경찰청 경찰관	25명
제3차 공무원 연수	11. 24. ~11. 25.	서울시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14명

2) 교원 연수

위원회는 올해 교사, 교육전문직, 전문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연수자들에게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재정립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내 갈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위원회는 서울·부산·광주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각 지정돼 있고 서울에서 4회, 부산과 광주에서 각 2회에 걸쳐 교원연수를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위원회 교육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원 연수]

[교원 연수 실시현황]

(2016. 1. 1. ~ 2016. 12. 31.)

과정명	일자	인원	학교분류별 연수자 인원			
			초	중	고	기타*
제1차 교원 연수	1. 6. ~ 1. 8.	22명	11	6	4	1
제2차 교원 연수	1. 13. ~ 1. 15.	16명	1	10	2	3
제3차 교원 연수	1. 18. ~ 1. 20.	27명	13	10	4	
제4차 교원 연수	1. 20. ~ 1. 22.	17명	15	1	1	
제5차 교원 연수	8. 1. ~ 8. 3.	15명	5	4	2	4
제6차 교원 연수	8. 8. ~ 8. 10.	26명	10	10	3	3
제7차 교원 연수	8. 10. ~ 8. 12.	14명	8	2	1	3
제8차 교원 연수	8. 17. ~ 8. 19.	13명	7	6		

* 특수학교 및 종합학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연수자

3) 예비 법조인 연수

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 1회 예비 법조인 연수를 실시했다.

예비법조인 연수는 10일, 총 80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수 과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언론법과 ADR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언론법제 및 언론관련 판결, 법원 조정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조정심리 참관과 모의토론회를 통해 분쟁해결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법적 지식을 함양하고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제공했다.



[제1차 예비 법조인 연수]

[예비 법조인 연수 실시현황]

(2016. 1. 1. ~ 2016.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예비 법조인 연수	2. 15. ~ 2. 26.	16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24명
제2차 예비 법조인 연수	8. 16. ~ 8. 26.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4명

4) 대학생 연수

위원회는 2016년 6차례에 걸쳐 총 15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부산과 광주 지역에서 각 2회 연수를 실시하여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방과 후 시간대인 야간과정을 개설하고, 선배 언론인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 듣기와 기사 작성법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대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학생 연수 실시현황]

(2016. 1. 1. ~ 2016.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대학생연수	5. 10.	부경대학교 언론사 소속기자	19명
제2차 대학생연수	5. 23.	서울 시내 대학교 언론사 소속 기자 등	18명
제3차 대학생연수	6. 21.	광주대학교 언론사 소속기자 등	10명
제4차 대학생연수	11. 3.	경성대학교 언론사 소속기자	16명
제5차 대학생연수	11. 8.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사 소속기자	22명
제6차 대학생연수	11. 14.	전남대학교 언론사 소속기자	15명

5) 외국 언론인 연수

위원회는 케냐, 우간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 언론인들과 재외동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2회 실시했다.

위원회의 다양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해 조정·중재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 언론인 및 재외동포 언론인과 함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외국 언론인 연수 실시현황]

(2016. 1. 1. ~ 2016.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외국 언론인 연수	10. 18.	6개국 외국 언론인	6명
제2차 외국 언론인 연수	11. 23.	재외동포언론인	50명

6) 기관위탁 연수

위원회는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국방정신전력원 군과 미디어 과정,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및 합동참모 과정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총 5회 진행했다.

참여 교육생들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 임원, 군 간부 등이었으며, 교과과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과 함께 기관업무 수행 중 발생한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갈등 및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등으로 구성했다.

[기관위탁 연수 실시현황]

(2016. 1. 1. ~ 2016.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기관위탁 연수	6. 21.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생	60명
제2차 기관위탁 연수	6. 27.	국방정신전력원 군과 미디어과정 교육생	16명
제3차 기관위탁 연수	9. 6. ~ 9. 7.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203명
제4차 기관위탁 연수	9. 9.	국방정신전력원 군과 미디어과정 교육생	20명
제5차 기관위탁 연수	11. 21. ~ 11. 22.	국방대학교 합동참모과정 교육생	68명

7) 지역 언론인 워크숍

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사)인터넷신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총 4회, 100명의 지역언론인이 워크숍에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각종 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언론인의 교육 수요와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언론취재보도 실무와 언론분쟁예방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인터넷신문, 방송사 등 매체별 언론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사례와 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언론인 워크숍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교육을 통해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오류와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실제 언론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의 장점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4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현황]

(2016. 1. 1. ~ 2016.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3. 4. ~ 3. 5.	지역언론사 대표 및 기자	21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6. 2. ~ 6. 3.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21명
제3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9. 1. ~ 9. 2.	방송기자연합회 소속 기자	21명
제4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10. ~ 11. 11.	(사)인터넷신문위원회 회원사 기자	37명

3.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위원회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격권 관련 소양을 높이는 한편, 언론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전국 9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청주, 전주, 창원)에서 진행됐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방학기간은 물론 자유학기제 시행을 반영해 학기 중에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위원회는 초등학교생들의 언론중재스쿨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 초등학교생 대상의 오픈형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증설해 교육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채널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신문박물관 등과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교육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언론사 견학 등을 통해 언론 현장을 미리 익혀 향후 진로탐색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언론중재스쿨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언론분쟁 및 언론조정중재 절차, 기타 위원회 법정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과정(3시간) 이외에 6시간 종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기사심의 체험, 도전골든벨, 모의조정 및 또래조정 실습 등을 진행해 보다 풍성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분쟁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전국 9개 지역에서 총 126차례 실시했으며 2,321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이수증을 받았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4. 교육콘텐츠 개발

가. 교육 서비스의 전문성 및 체계성 강화

2016년 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뒀다.

첫째, 언론 분쟁 관련 법리 및 언론조정중재 제도에 관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위원회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용 PPT를 추가 개발하였다. 2015년 언론인, 초·중·고생, 기업 및 기관 홍보담당자 등을 위한 교육용 PPT를 제작한 데 이

어, 2016년에는 경찰, 어린이집 교원, 일반인(분쟁해결 전문과정 연수용 포함) 교육용 PPT를 추가 제작하여 교육 콘텐츠의 가독성 및 전달력을 높였다.

ADR용	경찰용
	
어린이집 교원용	일반인용
	

[교육대상자별 교육 PPT 표지]

셋째, 교육 업무에 서비스 개념을 접목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했다. 교육 실시 전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고, 교육 실시 후 개선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언론인 대상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질의응답 사항을 바탕으로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개정정보판을 발간하여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를 제고했다.

나. 교육 수요자 맞춤형 체험 콘텐츠 개발 확대

위원회는 2015년부터 교육 수강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강의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모의조정’, ‘도전 골든벨’ 등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에서 수강생의 높은 참여와 만족도를 이끌어낸 프로그램을 공무원, 홍보담당자 등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 및 교육 사례 등을 개발하고 모의조정을

비슷한 소규모 그룹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위원회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제3절 평 가

위원회 교육사업은 매년 질적·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6년 위원회는 언론중재아카데미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교육수강생들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분쟁해결 전문연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등의 콘텐츠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보완·개발하여 교육생들에게 효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노력했으며, 교육 과정 역시 수요자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18,031명이 참여한 437회의 교육을 실시, 전년도 391건을 뛰어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한 해 교육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중재아카데미 각종 교육과정에 대해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진행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화를 확보했다. 또한 위원회 교육 담당 실무직원이 한국 표준협회의 ‘교육과정 기획 개발전문가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꾀하였다. 아울러 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뉴스레터 등)를 활용해 언론중재아카데미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한편, 예비교육수강자들이 사전에 언론중재아카데미의 연간 일정을 미리 확인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둘째, 분쟁해결 전문연수를 주간 과정과 야간 과정으로 나눠 실시함으로써 상당 및 민원업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했다.

셋째, 서울 중심의 교육 진행을 벗어나 지역의 교육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시교육연수원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부산 지역 교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사)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언론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언론인 워크숍을 개최, 지역 언론인들의 언론윤리 의식 고양 및 현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부산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연계해 홍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과 언론홍보 대응과정 등을 개설하여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전국 9개 지역에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학생과 언론인, 공무원 등도 위원회의 수준 높은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했다.

넷째,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PPT를 개발하고, 언론분쟁 관련 법적 쟁점 및 언론조정중재제도에 관한 교육동영상을 제작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위원회 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교육동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대상별 모의조정 시나리오를 제작해 활용하고 도전 골든벨, 토론형 스터디 등의 실무 체험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다섯째, 각급 학교의 자유학기제 실시 등에 따른 다양한 학생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초등학생 대상 오픈형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중고생 대상의 중일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두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언론사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통해 언론사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 위원회를 찾은 학생들이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충실한 교육 수강은 물론 향후 자신들의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7년에도 위원회는 전년도에 성과를 거둬삼아 다음과 같이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분쟁해결 전문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보완·개발하는 한편, 야간에만 개설해 운영해 온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을 주간 및 야간에 동시에 개설, 위원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일정과 편의에 맞게 강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더 많은 교육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주제별로 전문 강사 등을 초빙해 특강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해 교육 수요층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을 폭 넓게 홍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언론인, 학생 등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언론피해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언론인과 대학생 연수를 오픈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 광주 지역에서만 진행되던 대학생 연수를 타 지역으로 확대하여 위원회가 진행하는 교육의 수강 지역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언론중재스쿨의 경우, 오픈형 교육 일반과정(체험프로그램 제외) 횟수를 늘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던 제주 지역에서도 교육 실시를 추진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끝으로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ADR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통해 미디어 법제 분야의 발전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발간, 학술 행사 등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간 35주년을 맞이한 계간 〈언론중재〉에서는 저널리즘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적 쟁점과 이슈를 짚어보았고,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학문적 장을 마련하였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에서는 실제적 조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과 〈2015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통해서 위원회가 처리한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의 주요 사례, 법원의 언론관련 주요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하는 한편, 통계적인 분석을 더해 실무적, 학문적으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세미나와 토론회에서는 혐오·모욕표현, 무분별한 성범죄 의혹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 실태와 원인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새누리당 광상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

회를 열어 광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와 우려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가. 계간 <언론중재>

위원회는 국내외 언론법제 및 미디어 관련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계간 <언론중재>를 발간하고 있다. 1981년부터 발간해 온 계간 <언론중재>는 언론법제 및 미디어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내외 언론법제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콘텐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 및 법학 연구자, 현직 언론인, 법조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엄정하게 선별된 최신 저널리즘 이슈와 언론법제 분야의 쟁점이 고루 <언론중재>에 담겨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6년 <언론중재>에서는 ‘Focus on Media’ 코너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법제도적 이슈, 최근 인격권 관련 판결에 나타난 법적 쟁점, SNS를 통한 루머의 확산과 IT 기술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기술 진화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인격권 보호 관련 쟁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서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오버 더 톱(Over The Top, OTT), 검색 알고리즘, 소셜 미디어 등 시의성 있는 미디어 관련 동향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해외 판결(법제)’ 코너 및 해외통신원 제도를 통해 독일, 프랑스 등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최신 법제와 판결 동향을 전했다. ‘사건 속 법률’ 코너에서는 표현의 자유, 인격권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판례토크’ 코너에서는 최근 주요 언론관련 판결의 내용과 의의를 정리해 소개함으로써 언론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계간 <언론중재> 주요 내용]

호 수	주 요 내 용
2016년 봄호 (통권 138호)	<p>[Focus on Media :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p> <p>(1)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변화, 언론의 법적 개념도 바꿀까? (양정애)</p> <p>(2) 알고리즘 편집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박아란)</p> <p>(3) 이용자는 저널리스트? MCN의 급부상과 미디어 리터러시 (김균수)</p> <p>[사건 속 법률]</p> <p>‘제국(帝國)’과 자유 -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장철준)</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해외 글로벌 뉴스 플랫폼의 쇄도와 법적 문제 (전응준)</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p> <p>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판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 (최경진)</p>
2016년 여름호 (통권 139호)	<p>[Focus on Media : 최근 인격권 관련 판결이 던지는 몇 가지 질문]</p> <p>(1) 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 여부 누가 판단하나 (심우민)</p> <p>(2)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직자의 이중적 지위,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승선)</p> <p>(3) 비선형 미디어 시대,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 하나 (김경환)</p> <p>[사건 속 법률]</p> <p>네트즌 수사대의 여론재판, 범죄자에게 인격권은 없다? (최진순)</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소셜 미디어, 그 놀라운 변신 이야기 (김익현)</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p> <p>페이스북 ‘친구찾기’에 대한 독일법원의 판결과 최근 동향 (임정숙)</p>
2016년 가을호 (통권 140호)	<p>[Focus on Media : 루머 탐하는 사회, 찌라시 권하는 SNS]</p> <p>(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루머의 탄생과 확산 - 주목 경쟁, 셀러브리티화, 가십의 창궐 (전상진)</p> <p>(2) 루머가 SNS를 만나면 뉴스가 된다? - 루머 확산매체로서 SNS와 저널리즘 (홍주현)</p> <p>(3) 소셜 미디어 루머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법적쟁점 (정안)</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모두가 아는 검색, 아무도 모르는 검색 알고리즘 - 검색서비스 중립성을 둘러싼 이론과 논점 (강정수·김수철)</p> <p>[판례토크]</p> <p>고소당한 유명인사 관련 보도와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한위수)</p>
2016년 겨울호 (통권 141호)	<p>[Focus on Media : 투명사회와 프라이버시권의 미래]</p> <p>(1) ‘Zero 프라이버시’ 시대와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이광석)</p> <p>(2) SNS 공간의 패러독스와 프라이버시 : SNS 공간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법적쟁점 (유지연)</p> <p>[사건 속 법률]</p> <p>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백대용)</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동영상 뉴스 콘텐츠의 혁신과 OTT 서비스 (배기형)</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p> <p>프랑스의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법안’과 디지털 프라이버시 (안문희)</p>

나.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위원회는 35년간 축적해 온 학문적·실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한 학술적 논의를 진흥하고자 2015년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초연결사회와 인격권”을 주제로 제2권을 발간하였으며, 언론학·법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기획논문과 연구논문이 각각 3편씩 수록되었다.

기획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 검색 알고리즘, 시민의 사생활과 국가적 법의 등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또한 연구논문을 통해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분야의 연구를 통해 피해구제 영역의 외연을 넓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미디어 변화에 따른 인격권 보호 체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각급 대학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타 학술연구와 언론 등에 인용되면서 언론법제분야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학술지 수록 논문 전문을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에 공개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현상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촉진하고 있으며,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제2권 제1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기획 논문	박아란 오세욱	검색 알고리즘과 인격권 침해
	최종선	잊힐 권리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심우민	초연결사회에서의 정보 사생활과 국가적 법익간의 형량
연구 논문	오기두	인터넷개인방송에 의한 표현의 보호와 규제
	이정기	'중북(從北)' 관련 판례의 특성과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표현의 자유 인식
	임효준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제도 구축에 관한 시론적 연구

다. 계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위원회 조정 실무의 지원을 위해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를 1년에 4차례 발간하고 있다. 2016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에서는 설득 관련 이론과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울산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 조정사례, 마산 진로소주 공장 증설 갈등 중재사례 등 국내 조정 성공사례와 영국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사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 사례, 미국 USPS 사례 등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해외 갈등조정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조정의 실제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를 조정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 중재 위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갈등의 원만한 해소 방안과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위원회 교육콘텐츠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회, 정부부처, 법원(조정센터 포함) 및 검찰, 법학전문대학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유관기관 및 학회, 갈등조정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계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주요 내용]

호 수	주 요 내 용
2016년 봄호 (vol. 1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동경제학으로 풀어보는 설득 II (김경일) 2. 키케로의 연설로 보는 수사학의 진수 (김종영) 3. 영화 속 협상의 노하우 (박상기) 4. 형사사건도 조정으로 해결한다 (강문원) 5. 영국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사례와 ADR로서의 퍼실리테이션 (구기욱)
2016년 여름호 (vol. 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동경제학으로 풀어보는 설득 III (김경일) 2.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대화 속 설득과 변론 (김헌) 3.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반한 협상전략과 설득 (조우성) 4.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 사례로 보는 공공갈등과 ADR (김강민)
2016년 가을호 (vol.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러티브(Narrative) 메시지를 통한 공감과 소통전략 (이현우) 2. 소피스트 대 소크라테스 (김헌) 3. 오해와 불신 해소를 통한 집단갈등의 해결 (허정도) 4. USPS 사례로 보는 미국의 전환적 조정제도의 의미와 시사점 (문강분)
2016년 겨울호 (vol. 2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공법과 우회법,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이현우) 2. 심리학으로 살핀 설득의 과정 (김주연) 3. 조정 현장에서 살펴보는 설득의 노하우 (오현석) 4. 공공갈등 중재의 새로운 시도, 시민배심원 제도 (한상진)

라.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중재신청 사건 및 시정권고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발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에는 위원회가 2015년에 처리한 5,227건의 조정사건과 26건의 중재사건 중에서 시의성이 있거나 법리적인 의미가 있는 사례 29건을 선정하여 상세 사항을 수록했다. 인격권 침해 유형별로는 명예훼손 사례 17건, 초상권 침해 사례 5건, 음성권 침해 사례 2건, 사생활 침해 사례 1건, 재산상 손해 사례 2건, 기타 2건 등이다.

이와 함께, 2015년 발생한 언론분쟁사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사건의 목록을 수록했다. 2015년에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단체가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신청한 대량 사건이 이어져 별도의 장으로 정리했다.

또한, 2015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438건의 언론보도 중 21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법익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4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2건, 범죄수법 묘사 3건, 자살 관련 보도 5건, 마약 및 약물보도 5건, 기사형 광고 2건 등이다.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수록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 대량사건 조정신청 및 처리 현황 -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체 목록 	E-Book (636면)

마.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위원회는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을 수집·분석해 그 결과와 주요 판결을 담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보고서는 언론의 취재·보도 현장에서 언론분쟁 예방을 위해 참고가 될만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언론 관련 판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2015년에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215건에 대한 통계 분석과 함께 제1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판결 7건, 제2장 손해배상청구 판결 중 명예훼손 사례 17건, 초상권 침해 사례 2건, 사생활 침해 사례 2건, 재산권 침해 사례 1건, 기사삭제청구 등 판결 3건 등 32건을 선정,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2. 세미나·토론회 개최

가. 정기세미나

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실태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자 2016년 8월 23일~24일 경기도 광주에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양대 이재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의 발제는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와 경향신문 최민영 차장이 토론에 나섰다. 두 번째 주제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는 서울중앙지법 오선희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5중재부장)가 발제를 맡았고 부산대 조소영 교수와 헌법재판연구원 김현귀 책임연구관이 토론에 나섰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오와 모욕 등의 폐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6년도 정기세미나]

[2016년도 정기세미나 개최현황]

일 자	2016. 8. 23. ~ 24.	
장 소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	
주 제	대주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1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 · 발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사회: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토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민영 (경향신문 미디어기획팀 차장)
	세션2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 발표: 오선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5중재부장) · 사회: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토론: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석인원	언론계, 법조계, 학계, 중재위원 등 80여 명	

나. 토론회

위원회는 보도 관행의 점검을 통한 저널리즘의 발전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5일 부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 양재규 변호사가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토론회는 부산지법 박중훈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동의대 문종대 교수, 부경대 오창호 교수, 부산일보 유명준 논설위원, 동아대 조재현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공인의 성범죄혐의 보도는 언론이 보도해야 할 중요한 시사적 사항이지만 보도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그 책임은 언론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도 시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 혐의의 경중, 증거자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법원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액을 고액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토론회]

[2016년도 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16. 10. 25.
장 소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주 제	<p>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 사회: 박중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 토론: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li style="padding-left: 20px;">오창호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위원) <li style="padding-left: 20px;">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 <li style="padding-left: 20px;">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석인원	언론계, 법조계, 학계, 중재위원 등 60여 명

다.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2016년 12월 6일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박상도 국회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진단 :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2015년 정책토론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음 공개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에 초점을 두었다면, 2016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진단했다.

제1주제(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 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발제를 맡은 위원회 권오근 운영본부장은 “현재 인터넷신문이 늘어나고 전통매체들도 인터넷기반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데, 언론피해구제 제도는 아직도 아날로그법제에 갇혀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보완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제2주제(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발제에서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기사삭제청구권은 자칫 정부 등 권력자를 비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언론보도는 역사적 기록물이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의 진지한 발표 후 지성우 중재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이 침해배제청구권, 기사 댓글의 조정대상 포함 문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16년 정책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전문가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큰 관심이 확인됐다.

[정책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16. 12. 6.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 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발표 : 권오근(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 제2주제 :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 발표 : 문소영(서울신문 사회2부장)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 토론자 :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li style="padding-left: 40px;">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li style="padding-left: 40px;">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li style="padding-left: 40px;">임철수(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참석인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언론계, 학계, 중재위원 등 70여 명

라. 중재위원 연수

위원회는 전국 18개 중재부 중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5월 12일 ~ 13일 양일간 강원도 강릉시 소재 라카인 샌드파인에서 중재위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제1주제 : 법원판결 경향에 비추어 본 언론조정 실효성 제고방안'(발제 : 배영근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과 '제2주제 : 조정심리 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발제 : 김명중 광주중재부 중재위원)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재위원들은 발제자들이 제시한 언론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 경향과 위원회 조정결과 비교, 위원회 언론조정심리 횟수 및 소요시간 등의 데이터, 2015년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정중재제도 운용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중재위원들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중재위원 연수]

[중재위원 연수 개최현황]

일 자	2016. 5. 12. ~ 13.
장 소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주 제	제1주제 : 법원판결 경향에 비추어 본 언론조정 실효성 제고방안 제2주제 : 조정심리 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
참석인원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 59명

마.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지역언론사 대표를 초청한 간담회 2회(제주, 충북)와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간담회 8회 등 총 10회의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는 중재위원과 지역 언론인 간의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조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 지역 언론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해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과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언론법제와 저널리즘 관련 분야의 도서 및 정기간행물을 비치하여 언론법제 전문가

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신규 도서 구입과 정기간행물 구독을 통해 중재위원 및 직원은 물론 유관기관 관계자, 언론법제 연구자들의 실무와 학술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언론 및 법학 분야, 설득 및 수사 분야, 기타 업무 관련 도서 197권을 신규 비치하였으며, 언론법제와 관련한 최신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말 현재 총 17종의 간행물을 구독 중이다.

[자료실 보유장서 등록 현황]

(2016. 12. 31. 현재 / 단위: 권)

구 분	국내도서	국외도서	합계
2016년도 신규 구입 통계	185	12	197
	93.91%	6.09%	100.00%
보유 장서 전체 통계	5,594	360	5,954
	93.95%	6.05%	100.00%

제3절 평 가

위원회는 발간 및 학술행사 등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지난 35년 간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이론과 실무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혐오 등 우리 사회에서 긴급히 진단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언론계, 학계와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였다. 또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상 언론보도 피해 구제 수단인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해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그 기대효과와 우려를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는 해소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발간물을 통해서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저널리즘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양상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언론법제 및 각종 미디어 이슈에 관한 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언론법제 분야의 진흥을 선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민의 피해구제와 인격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4 장

이용만족도조사 및 대국민 여론조사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매년 언론조정중재·상담·교육서비스 등 위원회 주요 사업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이용자 중심 서비스 구현과 위원회 장·단기 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 언론조정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정·중재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설문지는 ‘상담창구’와 ‘신청절차 및 방법’, ‘심리 전/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진행’ 등의 차원으로 구성해 항목별 만족도를 측정했으며,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설문지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 항목 중 ‘상담창구’와 ‘신청절차 및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제시하고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상담이용자 조사는 ‘상담원의 친절’, ‘상담원의 경청 자세’, ‘문제 해결에 도움’ 등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해 만족도를 측정했으며, 교육수강자 조사는 ‘주제 및 내용’,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 등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산출했다. 그 밖에 위원회 현안과 관련해 ‘침해배제청구권/복제기사/기사덧글’ 관련 문항을 구성해 조사했으며, 피신청인을 대상으로는 ‘시정권고제도’와 관련된 설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또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10명을 선정해 개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 위원회 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업무 등과 관련한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가 느낀 만족수준을 5점 척도로 응답받은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했고, 종합만족도는 각 차원 및 항목 만족도에 전반적 만족도 간 상관분석으로 얻은 상관계수 값을 중요도(가중치)로 부여해 산출하였다.

2016년 이용만족도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주)리서치랩이 대행하여 2016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위원회를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별로 온라인조사(신청인 및 피신청인), 전화조사(상담 이용자)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수강자의 경우 현장 설문 후 대행업체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201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책자로 발간하였다.

특별히 2016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및 여론 파악을 위하여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2016년 9월 2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응답자 1,000명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에 대한 의견 등을 묻고 그 결과를 수록한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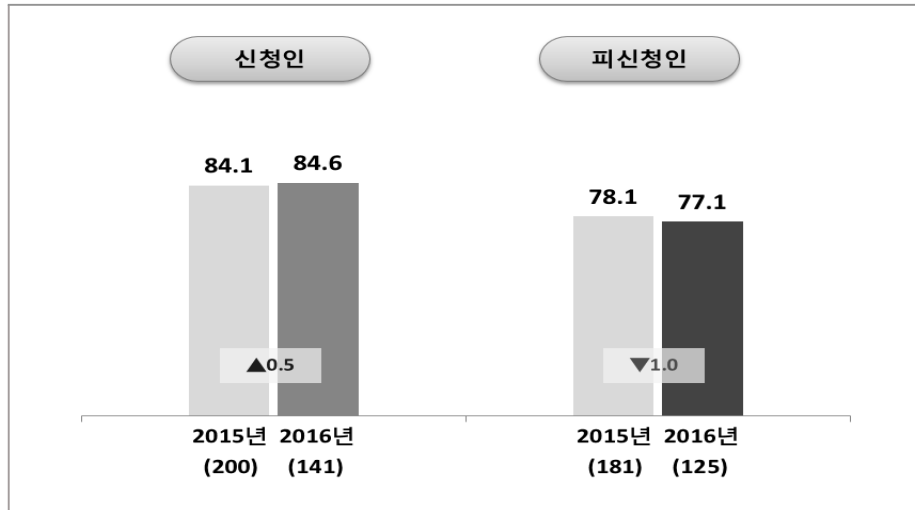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2016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84.6점으로 2015년보다 0.5점 상승했고, 피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7.1점으로 전년보다 1점 하락하여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청인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 창구’(87.6점) > ‘심리 후 절차 안내’(86.0점) > ‘심리 전 절차안내’(85.7점) > ‘신청 절차 및 방법’(83.7점) > ‘중재부의 심리 진행’(81.6점) 순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 안내’(81.0점) > ‘심리 후 절차 안내’(78.2점) > ‘중재부의 심리 진행’(73.6점) 순이었다.

신청인 항목별 만족도는 ‘상담원의 친절’(92.6점), ‘상담원의 경청 자세’(92.0점), ‘적극적인 상담’(91.5점) 항목 만족도가 90점을 상회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신청인의 경우 ‘심리 기일의 신속한 통보’(85.1점), ‘지참물에 대한 안내’(84.3점), ‘조정 조서, 결정서 등의 신속한 송부’(81.8점)와 심리 전 절차에서의 ‘담당 직원과의 접촉 용이성’(81.6점) 항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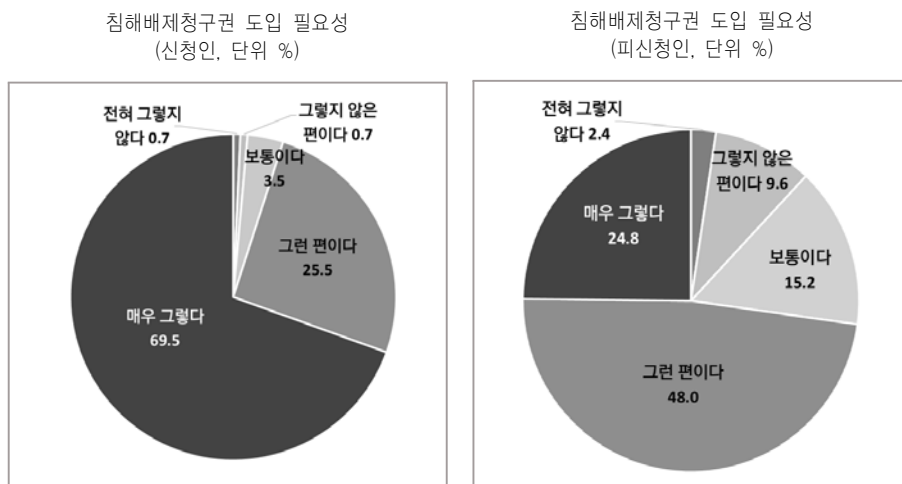
[표 38]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응답자수 = (). 단위 = 점]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침해배제청구권)의 도입에 대해서 신청인의 다수(95.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피신청인의 72.8%도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위가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94.3%, 피신청인의 64.8%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인격권 침해 보도의 복제기사(펌글)에 대해서도 중재위가 피해구제를 해야 하는냐는 질문에 신청인의 92.2%, 피신청인의 66.4%가 긍정 응답하였다.

[표 39]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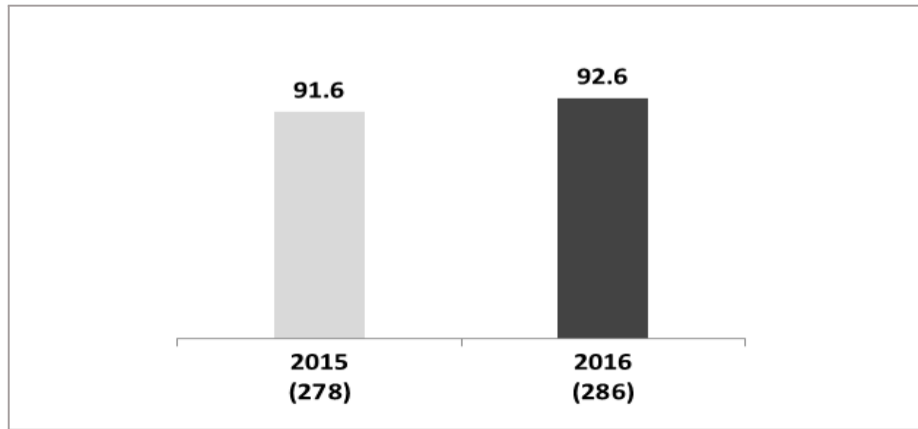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92.6점으로 2015년보다 1점 상승하였다. 특히 ‘문제 해결에 도움’ 항목 만족도가 90.6점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3.1점)으로 상승하였다.

항목별 만족도는 ‘상담원의 경청 자세’(94.8점) > ‘상담원의 친절’(94.7) > ‘적극적인 상담’(92.9점) > ‘상담 내용의 신뢰성’(92.6점) > ‘신속한 상담’(92.4점) > ‘문제 해결에 도움’(90.6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0]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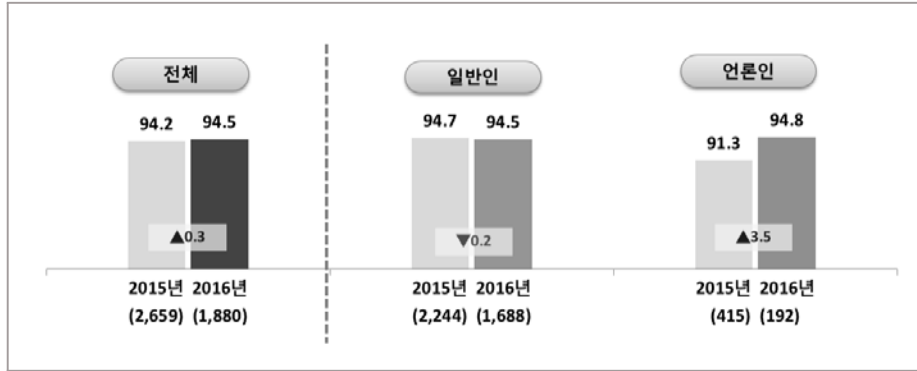


[응답자수 = (), 단위 = 점]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는 94.5점으로 2015년보다 0.3점 상승하였다. 일반인 수강자 만족도는 94.5점, 언론인은 94.8점으로 언론인 만족도가 일반인보다 0.3점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97.7점) >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5.2점) > ‘교육자료의 충실성’(94.5점) > ‘제도에 대한 이해’(93.6점) > ‘주제 및 내용’(91.9점) 순이었다.

[표 41]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응답자수 = (),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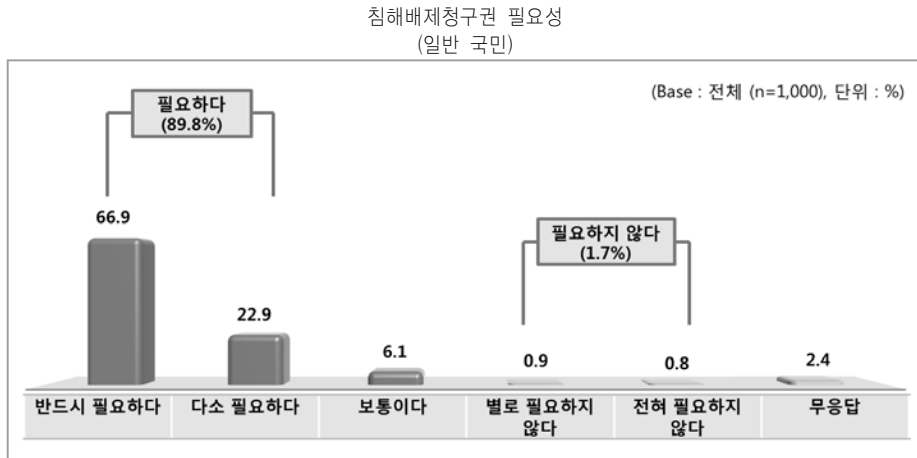
4. 대국민 여론조사결과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및 여론 파악을 위하여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기사로 인한 인격권,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은 80.3%에 달했으며, 이러한 인터넷 기사에 대해 수정·보완·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8%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지 ‘다소 필요하다’고 답하여 침해배제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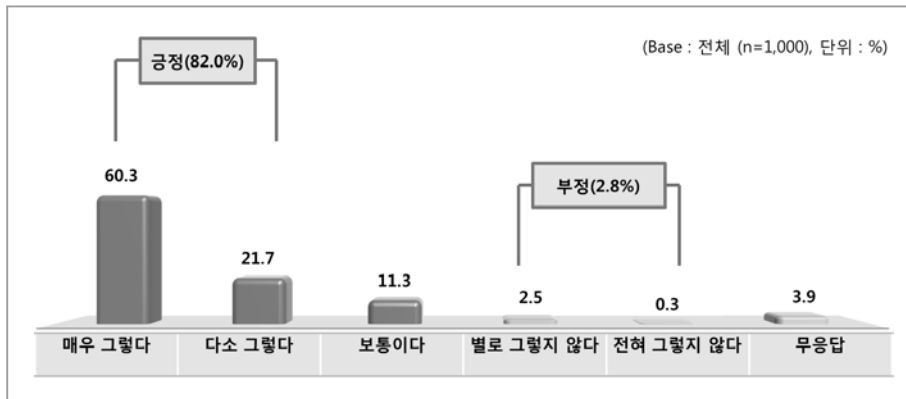
이 밖에도 응답자의 86.1% 이상은 잘못된 기사가 카페, 블로그 등에 전파된 복제기사나 기사에 달린 명예훼손적 댓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복제기사나 기사댓글에 대한 일괄적 피해구제서비스를 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 84.6%, 90.6%가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잘못된 언론보도 및 그 복제기사나 명예훼손적 기사댓글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위원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7.8%의 응답자가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리서치랩을 통해 2016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RDD 전화여론조사(CATI)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42] 대국민 여론조사 -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침해배제청구권 중재위 조치 필요성
(일반 국민)



제3절 평 가

2016년도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조정중재 신청인, 상담이용자 및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는 2015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신청인의 경우 2015년 조사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파악된 중재부의 심리진행 항목(79.1점 → 81.6점), 심리 후 절차 안내 항목(83.6점 → 86점)의 만족도가 상승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업무 효율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에 대하여 신청인은 2년 연속 90% 이상이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89.8%의 높은 긍정응답률이 나타났다.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시 의무가 부여되는 피신청인의 경우 긍정응답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2015년에 비해서는 2016년 대폭 상승(58.6% → 72.8%)하여 언론피해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실효적인 구제 수단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차원에서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등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에 애써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는 상담창구나 조사관의 친절성과 성의 있는 업무처리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심리 대기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분리되지 않고 사무공간과 연결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신청인/피신청인 대기장소 분리 등 조정심리 환경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 5 장 홍 보

제 1 절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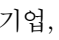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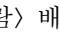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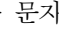
위원회는 위원회 주요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및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부응한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각종 정보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유통되고 수용되는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위원회 홈페이지를 반응형으로 제작,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가능 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블로그와 페이스북 위원회 페이지, 뉴스레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위원회 관련 다양한 소식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위원회 정책 관련 이슈 발생 시마다 시의적절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외홍보지,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위원회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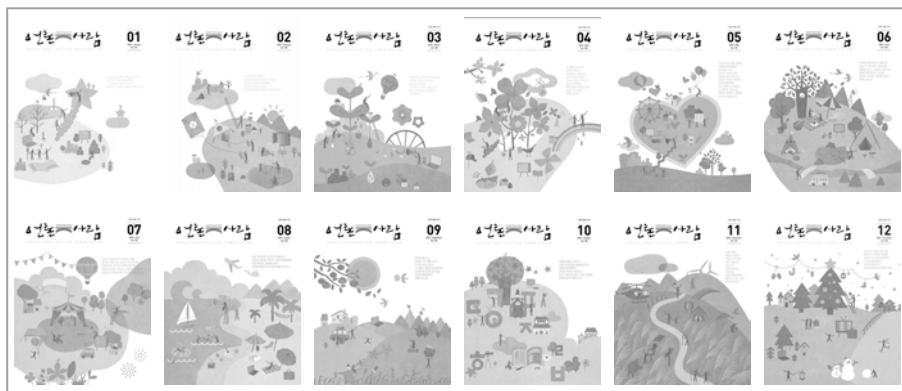
이밖에도 국민들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쉽게 익히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KTX 열차 내 모니터, 옥외 전광판, 서울 지하철 내 모니터를 통한 광고를 실시했다.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을 제작, 매월 8천부를 배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언론중재법 NOW’, ‘언중노트’, ‘위원회 NEWS’ 등의 코너를 통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들이 기고한 ‘오페라 칼럼’, ‘여행후기’ 등을 게재해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한편, 전국 시·도·군·구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법원, 대학, 도서관, 공공기관, 기업, 각종 경제단체 등에도 <언론  사람>을 배포했다. 아울러 2015년 대비 지면 발행부수가 12,000부에서 8,000부로 축소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언론  사람> 배포를 위해 노력했다. <언론  사람>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으며, 뉴스레터 형태로도 제작, 매월 약 2,500명의 수신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콘텐츠의 도달 범위와 노출기간을 확대했다.



[2016년 발행 <언론  사람>]

2. 블로그 및 SNS 운영

위원회는 공식 블로그(명칭 : 공감 블로그)와 페이스북 위원회 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최신 미디어 이슈, 언론법제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실

시,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 결과, 위원회가 운영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2016년 제6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올해의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위원회 블로그 조회수 44,283명,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 6,625건을 기록했다.

[월별 블로그 방문자 수 및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

(2016. 1. 1. ~ 2016. 12. 31.)

구 분	블로그 조회수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
1월	2,472	4,974
2월	2,739	4,975
3월	3,310	5,077
4월	4,130	5,114
5월	6,602	5,259
6월	54,117	5,578
7월	57,980	5,873
8월	49,420	5,914
9월	47,715	6,093
10월	40,359	6,293
11월	45,152	6,542
12월	44,283	6,625



[2016 제6회 대한민국 SNS 대상 ‘올해의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3. 매체 광고

위원회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을 고려, 노출 빈도 및 주목도가 높은 KTX 영상광고, 서울신문사 뉴스 전광판, 서울 지하철 내 모니터 광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데 유용한 인포그래픽 형식을 도입,

인쇄매체, 전파매체 및 온라인 매체 등의 매체유형별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각 매체의 주요 인격권 침해 내용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매체 광고 집행내역]

매 체 명	집행기간	비고
KTX 영상광고	5. 2. ~ 8. 1.	KTX 노선 146개, 4회 운영, 모니터 76대
서울신문사 뉴스전광판	5. 2. ~ 23. / 7. 16. ~ 12. 31.	12m×9m, 양면
지하철 1,3,4호선 승강장 및 대합실 모니터 영상광고	11. 3. ~ 12. 2.	인포그래픽 영상 3종



[인포그래픽 광고영상 화면]

4. 일반인 참여를 통한 홍보 콘텐츠 마련

위원회는 ‘2016년 제1회 웹툰 공모전’을 실시하여, 일반인 참여를 통한 위원회 홍보 기회를 마련하였다. 40여 명의 지원자가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7명(대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웹툰 공모전 수상작은 대외 홍보지, 블로그, SNS,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됐다.



[제1회 언론중재위원회 웹툰 공모전 개최]

5. 미디어 퍼블리시티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2015년도 조정·중재 처리결과,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 위원회 주요 업무에 관한 보도자료 18건을 배포하여 총 253회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잘못된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6. 위원회 사료의 디지털 전시

위원회는 2015년도에 구축한 디지털 전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원회 역사 기록과 업무 홍보에 활용했다. 사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기록 2건, 정기간행물 1건, 각종 간행물 2건, 문서철 1건, 사진 1건, 기타 물품 1건을 사료로 선정하여 사료 전시 시스템에 전시하였다.

제3절 평 가

2016년도 위원회 홍보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설명,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통합, 독자 친화적인 콘텐츠 발굴, 이벤트 및 공모전 등의 일반인 참여를 통한 홍보 콘텐츠 마련에 집중했다.

향후에도 위원회 관련 다양한 정보와 정책 이슈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등을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제 6 장

기타 주요활동

1.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위원회는 2016년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과 시안(西安)을 방문, 베이징대학(北京大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산시방송국(陝西廣播電視台)을 시찰하면서,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중국의 언론현황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베이징대학 신문방송학원 초청으로 이루어진 박용상 위원장의 ‘뉴미디어시대의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 특강에는 교수, 기자,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 후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주제로 열린 논의가 펼쳐졌다.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중국 학계, 언론계 인사들은 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재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조정·중재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위원회에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표했다.



[박용상 위원장 베이징대 특강]

[해외언론평해구제기구 시찰현황]

시찰자 및 수행자	기간	방문지	방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용상 위원장 - 권우동 사무총장 - 심영진 운영본부장 - 김주용 연구팀장 - 한혜연 기획팀 직원 	2016. 5. 22. ~ 2016. 5. 28.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대학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시방송국

방문기관 관계자들 또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인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오랜 기간 축적한 언론평해구제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산시방송국 왕푸바오(王福豹) 사장은 “중국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별도로 두지 않고 주로 행정관리, 법원소송 등을 통해 언론평해를 구제하고 있다”며 위원회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우상즈(吴尚之) 부국장은 “한국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평해구제에 있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위원회의 언론평해구제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시찰을 통해 중국의 언론 현황과 언론분쟁양상 및 해결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언론평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를 중국의 주요 학계와 언론계에 소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중국의 유관기관 및 학계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알려 나갈 계획이다.

2. 국제컨퍼런스 협력

위원회는 2016년 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회 미디어&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와 6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66회 ICA(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언론학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들과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저널리즘 동향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제컨퍼런스 참가 현황]

구 분	내 용	
회 의	제2회 미디어&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	제66회 ICA 국제컨퍼런스
일 자	2016. 4. 21. ~ 2016. 4. 22.	2016. 6. 9. ~ 2016. 6. 13.
장 소	태국 방콕	일본 후쿠오카
주 제	기술이 미디어와 인간의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과 권력
참석자	서울제4중재부 이태수 중재부장, 서울제7중재부 박종렬 위원, 서울제8중재부 김동규 위원, 강현석 조사팀 팀장, 오윤미 접수상담팀 차장	서울제3중재부 박인식 중재부장, 서울제1중재부 홍은희 위원, 서울제3중재부 한석동 위원, 손정배 예산회계팀 팀장, 박은영 교육콘텐츠팀 직원

‘기술이 미디어와 인간의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회 미디어&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에는 약 30개국에서 200여 명의 언론학자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저널리즘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을 주제로 한 제66회 ICA 국제컨퍼런스에는 약 40개국에서 2,5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석하여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최근 현안과 연구 경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방문단은 세계 각국의 언론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각국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기능과 효과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유관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연구자 및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언론조정제도의 우수성을 해외에 전파할 계획이다.



[제2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국제컨퍼런스 참석]



[제66회 ICA 국제컨퍼런스 참석]

3. 보도기준 토론회 개최

2016년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관련 국내외 판결 및 학계의 논의를 연구하여, 언론조정중재 사건 처리 시 실무상 기준 및 언론사가 보도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을 중심으로 10차에 걸쳐 보도기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보도기준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언론관련 판례, 언론피해구제 관련 논문 및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4.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교육 실시

2016년 위원회는 '사무처 직원의 직급·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적극적인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연간 교육 시간 이수제를 도입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교육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이수시간을 달리 인정하고, 봉사활동이나 연구모임도 교육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등 직원들이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고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법률 이론 및 실무 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 위원회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 언론법제 분야의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 전문 강사들을 발굴, 사내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지닌 내부 직원도 강사로 활용하여 민·형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전문 교육 실시 현황]

구분	주제	강사
뉴미디어	비선형 미디어와 저널리즘 과제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
인격권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언론법제	법적 분쟁 당사자에 대한 조정과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언론조정중재편람”을 중심으로 살핀 민사법 개론 1	김주연 (접수상담팀, 변호사)
	“언론조정중재편람”을 중심으로 살핀 민사법 개론 2	
법률기초	형사소송절차 개관	김성현 (접수상담팀, 변호사)
	형사실체법 개관	
뉴미디어	디지털정보매개자와 미디어 이슈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민원인 응대	민원 처리사례 및 대응기법	김재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전문위원)
협상·조정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이해	김윤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소 계	10회	

한편 조정·중재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자기주도형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모임 지원기준」을 제정, 각 연구모임별로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ECHR(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연구회’, ‘민사소송연구’, ‘조정 실무자(조사관)의 분쟁해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등 3개의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관련 분야를 학습, 토론하였다.

[연구모임 활동현황]

동호회명	활동내용
ECHR 판례연구회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연구 및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해설집 번역 및 평석
민사소송연구	- 민사소송 제도 연구 및 동영상 강의 수강 - 기판력,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 민사 소송 이론 학습
조정 실무자(조사관)의 분쟁해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조사관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논의 - 설득 및 협상 관련 독서토론 등

5. 사회공헌 활동

위원회는 2016년 5월 월드비전이 주관하는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내 결식아동과 노인들을 위해 150여 개의 도시락을 조리,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11월에는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따뜻한 사랑꾸러미 나눔’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식품꾸러미를 제작하고 일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한편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1호(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돌보는 곳]에 후원금 3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위원회가 전달한 후원금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 보호, 양육하는 ‘대안가정’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국민의 인격권 및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언론조정중재 기관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2016년 사회공헌 활동]

구 분	일 자	내 역	기 부 처	기부금액
성금 기부	11.10. (목)	청소년 회복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	청소년회복센터 (사법형 그룹홈)	3,000,000원
봉사 활동	5. 31. (화)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월드비전 서울복지부 꿈빛마을	450,000원
	11.29. (화)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사랑꾸러미 나눔」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4,500,000원
소계	3회			7,950,000원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제4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의견

제 1 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및 의견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총 3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피해 구제방안을 제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중재위원 위촉권자 상향 및 추천권자 다양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각 발의안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안(2016. 10. 28. 발의)

1)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피해구제수단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에 한정됨.

그런데 명백하게 거짓된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거짓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언론보도로 인한 제반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도 일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정함(안 제1조 및 제7조).
- 나.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함)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마. 제33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및 제33조의2에 따른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한 기사 댓글이나 조정·중재·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권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 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검색사업자 및 사이트관리자는 제4장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33조의5 신설).
- 사. 중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의6 신설).

- 아. 제4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및 소송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 33조의7 신설).
- 자.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안 제 33조의8 신설).

3)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목적) <u>언론보도, 그 전파나 매개(媒介) 또는 검색서비스로</u>----- ----- ----- ----- -----.</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1.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 2 조(정의) ----- -----.</p> <p>1. ~ 21. (현행과 같음)</p> <p>2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p> <p>23. “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p> <p>24. “검색사업자”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25.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p>
<p>제 7 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⑩ (생략)</p>	<p>제 7 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 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서비스(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 -----.</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p> <p>② ~ ④ (생략)</p>	<p>제11조(사무처) ① ----- -----연구·상담 및 교육 등-----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제33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의 조정신청 등) ① 제33조 및 제33조의2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인격권피해자 등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u></p> <p><u>② 인격권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언론보도등에 관하여 독자 등의 댓글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을 상대로 인격권피해자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댓글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은 지체 없이 조정합의나 조정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댓글 게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④ 인격권피해자는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된 해당 보도의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복제·전파된 경우 그 복제·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 등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이하 "사이트관리자"라 한다)를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u></p> <p><u>⑤ 중재위원회는 제4항의 조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제·전파된 보도 내용이 게시된 사이트관리자에게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복제·전파된 해당 게시물의 삭제, 그 밖에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직권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u></p> <p><u>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이트관리자는 지체 없이 결정 등의 결과, 직권조정안 및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3조의4(이의 신청 등) ① 인격권피해자와 제33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법한 침해적 댓글 또는 위법한 침해적 언론보도의 복제·전파 게시물의 게시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이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이미 내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p> <p>④ 제1항의 이의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제3항의 기간 내에 제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p> <p>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의 있는 게시자는 사이트관리자가 제33조의3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거나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3조의5(언론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등) ① 언론사등, 검색사업자, 사이트관리자는 이 장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p> <p>② 이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이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자율규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은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사항에 관해 협조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3조의6(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한 피해 구제) 중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장의 구제절차에 따른다.</p>
<p>〈신 설〉</p>	<p>제33조의7(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준용) ①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소송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p> <p>② 제33조의3의 규정은 조정절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p>
<p>제4장 벌칙</p>	<p>제5장 벌칙</p> <p>제33조의8(시행규칙)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2.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2016. 9. 1. 발의) 및 노웅래 의원(2016. 9. 5. 발의) 대표발의안

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변재일 의원 등 12인 (2016.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위원 위촉권자 상향(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대통령)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언론인 :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 기타 :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수로 추천한 사람 ○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선거 후보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위원회 운영재원 다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 경비 출연 및 보조 가능 ○ 과태료 부과 주체(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의원 등 12인 (2016.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위원 위촉권자 상향(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대통령)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 · 전직 언론인 :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 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선거 후보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위원회 운영재원 다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 경비 출연 및 보조해야 함

3. 위원회 의견

구분	주요 내용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구제 수단만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도·전파·검색되어 위법하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실질적·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언론보도 등에 달린 댓글이나 위법한 언론보도의 복제·전파 게시 및 검색으로 인한 피해 역시 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등 상세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언론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준수법적 독립기구로서의 중재위원회 위상에 걸맞도록,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 ○ 중재위원 추천권자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미디어 및 방송통신 총괄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언론분쟁해결을 도모

제 2 장

기타 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의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은 1건(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민의 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으로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과 통합)이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의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

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장정숙 의원 등 10인 (2016. 9. 20.)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 중 사과문 게재 삭제
안전행정위원장(대안) (2016. 12. 1.)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 중 사과문 게재 삭제하고, 제재조치 다양화(제8조의3 제3항 1호부터 4호) -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 경고결정문 게재 / 주의사실 게재 / 경고, 주의 또는 권고

2. 위원회 의견

구분	주요 내용
위원회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의 다양화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사과문 게재는 삭제되어야 하고, 권리 침해사실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결정문 게재 등 다양한 결정유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제5부 2017년도 업무계획

제 1 장

2017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 정치일정 불확실 / 조기 대선 및 위원 위촉 지연 가능성

- 2016년 12월,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시기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유동적임
- 이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기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2017년 3월 임기만료인 22명의 중재위원 위촉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위원회 관련 법 국회 심의 진행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구제방안을 담고 있는 광상도 의원 대표 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및 중재위원 위촉권 상향 조정과 운영재원 변화를 가져올 개정안(변재일, 노웅래 대표발의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
- 또한 선거기사심의의 다양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가 진행될 전망

■ 언론조정신청사건 지속 증가 추이 전망

- 인터넷매체의 꾸준한 증가로 언론조정신청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2,433건, 2014년 19,048건, 2015년 5,227건, 2016년 3,170건)
- 특히 급증하는 조정신청사건의 대부분이 서울중재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사건 처리 방안 모색 절실
- 최근 5년간(2012~2016) 서울 8개 중재부의 각 부별 처리건수는 평균 697여 건(일반사건 기준 260여건)으로 지역중재부 평균 처리건수 87.4건(일반사건 기준 77.3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처리 한계치에 도달함

(2012. 1. 1. ~ 2016. 12. 31)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조정처리건수	2,401	2,433	19,048	5,227	3,170
일반사건 조정처리건수	2,401	2,433	<u>2,931</u>	<u>3,319</u>	3,170
서울중재부 일반사건 처리건수	1,832	1,806	<u>2,159</u>	<u>2,327</u>	2,266

* 밑줄 친 2014년과 2015년의 일반사건 수는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을 제외한 건수임

■ 공직유관단체 지정

- 청탁금지법의 시행(9. 28)과 관련 위원회의 법 적용 여부를 놓고 관계기관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위원회를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2017년 상반기부터 적용)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중재위원뿐만 아니라 사무처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

제 2 장

2017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및 시행 대비 철저

-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소통 강화
 -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8.)되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임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 및 시행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의원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안 설명 및 이해 노력 등을 경주
- 언론중재법 개정 의제에 관한 적시성·실효성 있는 대응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단체와 관계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및 충실한 설명을 통해 국민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이 잘 전달되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홍보 강화
-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조정·중재 실무 정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제도 운용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 실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여 만전을 기함

■ 이용자 중심의 언론조정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전문성 제고

- 조정사건 증가에 따른 중재부 증설
 - 언론조정신청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현행 중재부 운영방식은 조정신청 사건 처리 기한 지연, 조정심리 부실화 우려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언론조정신청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서울중재부 증설 적극 검토
 - 서울중재부 증설을 위한 법률적·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 서울중재부 처리 조정신청사건의 원활한 조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관 확충
 - 사무처 인력의 추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 심리실 및 민원인 대기실 등 조정심리 환경개선
 - 서울중재부 증설에 따라 요구되는 조정심리실 및 위원 대기실의 공간확충
 - 위원회 이용자들의 대기실 협소 등 불만내용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 대기실 환경 개선 추진
 - ※ 2016년 위원회 이용만족도 심층면접조사 결과
대기 장소가 협소하여 조정 대기 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었음. 대기 장소를 확장하여 조정 당사자 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대기 장소를 마련 해줬으면 좋겠음

- 〈인격권 관련 조정실무기준〉 성안 및 공표
 - 2016년 10차례에 걸친 내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내부 조정실무기준을 마련·공표, 조정을 위한 실효적 자료로 활용하는 등 언론분쟁조정기구로서의 전문성 제고

-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활동 강화
 - 언론분쟁 및 피해구제 양상의 변화 등에 관해 연구하여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간지, 학술지 등의 위원회 간행물을 통한 연구 진행

■ 대통령선거의 공정정보도를 위한 적극적인 기사심의

- 선거기사심의 모니터링 강화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

의 조기 실시 및 선거기사심의위 운영기간 단축이 예상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동안 후보자 검증 등 선거보도가 어느 선거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엄정한 선거기사심의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바람직한 선거보도 문화 개선
-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선거기사심의 결과,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등 다양한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부 록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2016년 12월 말 현재)

임원	
성명	주요 경력
 위원장 박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현)변호사
 부위원장 김재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대변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 특별심의위원장 • 문화일보 수석논설위원
 부위원장 조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일보 편집국장, 주필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 •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감사 조재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현)변호사
 감사 송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MBC 제작부장 • 대구MBC 보도국장

서울 제1중재부		서울 제2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중재부장 이 대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오 성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 용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현)변호사 	 지 연 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경영본부장 · 시청자 본부장 •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
 흥 은 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논설위원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현)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이 희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 (현)변호사
 조 재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현)변호사 	 권 순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판국장 • 경찰위원회 위원 • 고려대 미디어학부 관훈신영기금 교수
 지 성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 (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장 •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장판사 • (현)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 제3중재부		서울 제4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박 인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이 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 일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보부 섭외과장 • 주일본대사관·주샌프란시스코 영사관 공보관 • 아리랑국제방송 보도위원 	 임 경 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논설위원, 출판국장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한 석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논설실장 • 공보처 기획관, 총리공보실 전문위원 •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도 성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사회부장, 논설위원 • 에너지경제신문 편집인 겸 부사장
 허 은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상근고문변호사 • (현)변호사 	 양 인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현)변호사
 유 세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편성국 연구위원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 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인터넷선거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 (현)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현)서강대 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

서울 제5중재부		서울 제6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중재부장 오 선 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고 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장 세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공보실 공보기획관 • 주중한국대사관 홍보공사 •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장 	 김 재 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대변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보도·교양 특별심의위원 • 문화일보 수석논설위원
 홍 중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현)변호사 	 양 승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언론학회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성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논설위원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 (현)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배 영 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 고문변호사 • (현)변호사
 김 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부원장 • (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손 관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베를린 특파원, 보도특집 팀장 • iMBC 대표이사 사장 • (현)세한대 교수

서울 제7중재부		서울 제8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김 성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권 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중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체육부장 • (현)평창올림픽조직위 자문위원 • (현)한국체육언론인회 부회장 	 이 혁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사회부장, 정치부장, 이사 • (현)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박 중 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 • 가천의과대 경영대학원 원장 • (현)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이 중 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논설위원, 출판국장 • (현)신한대 언론학과 교수
 안 승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변호사 	 김 동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한국언론학회장 • (현)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한 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홍보학회 회장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현)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지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 • (현)서초구청 정보공개심의위원 • (현)변호사

부 산 중 재 부		대 구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박 중 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고법 부장판사 • (현)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임 상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 (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김 중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부국장, 논설주간, 이사 겸 주필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송 승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MBC 제작부장 • 대구MBC 보도국장
 오 창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케이션이론 학술지 편집위원장 • 부경대 교무부처장 • (현)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상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 (현)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황 지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부산국제광고제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 (현)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조 창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 (현)변호사
 전 정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 •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 (현)변호사 	 최 현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장 • (현)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광주 중재부		대전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중재부장 최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고법 부장판사 • (현)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방승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조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일보 편집국장, 주필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 •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송종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 • 중앙일보 상무이사 • (현)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김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대 국문학과 교수 • 광주문화재단 이사 • (현)국제펜 한국본부 펜문학 편집인 및 간행위원장 	 정교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고검 부장검사 •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 (현)변호사
 박재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고검 항고심사위원 •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현)변호사 	 송종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위원회 연구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현)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명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언론학회 이사 •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사장 • (현)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은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청남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 • (현)목원대 광고홍보언론학과 교수

경 기 중 재 부		강 원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이 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지법 부장판사 (현)수원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김 동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장판사 (현)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한 기 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일보 편집국 부국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국민대 초빙교수 	 김 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일보 논설실장, 편집국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오 광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현)단국대 교양교육대학 초빙교수 	 이 관 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KBS 연구위원 (현)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광 란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동부지검, 부천지청, 천안지청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현)변호사 	 김 효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동부지검 검사 강원도청 행정심판위원 (현)변호사
 홍 문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현)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안 정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소청심사위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충북중재부		전북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p>중재부장 양태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현)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p>중재부장 박강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현)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p>정정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회장 중앙인사위 인사정책 자문위원 (현)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p>김재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실 주필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이사
 <p>김영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일보 정치, 사회부장 새충청일보 대표이사 사장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p>진태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현)변호사
 <p>김준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현)변호사 	 <p>김봉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현)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 (현)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p>구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현)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p>김선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남언론학회 회장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 (현)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 남 중 재 부		제 주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정 재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현)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변 민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중앙지법 판사 (현)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민 말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창원YMCA이사장 	 오 상 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제주 해설위원 한국관광레저학회 회장 (현)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임 영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북부, 부산검찰청 검사 (현)변호사 	 양 원 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MBC 편성제작국장 (현)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현)제주영상문화연구원 원장
 이 영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신문 논설실장, 편집국장, 상무이사 창원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강 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주지법 판사 (현)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장 (현)변호사
 이 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럴드경제 국제부장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현)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 희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제주영상위원회 이사 (현)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현)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2. 설립근거 및 기능

가.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 심의 및 시정권고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심의
-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연혁

- 1981. 3.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제1기 중재위원 39명 위촉(안우만 위원장 취임)
 - 서울 4개 중재부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중재부 설치(총 13개 중재부)
 - 사무국(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및 9개 지역사무소 설치
- 1981. 4.29. 언론중재위원회 현판식(사무국)
- 1984. 3. 2. 경남중재부 신설
- 1985. 4. 3. 임규운 위원장 취임
- 1985. 4.21. 사무국을 현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로 이전
- 1986. 2.24. 정희택 위원장 취임
- 1987.11.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
 -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 1991. 3.2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993. 3.31. 김두현 위원장 취임
- 1995.12.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등

- 1996. 7. 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
- 1999. 4. 9. 박영식 위원장 취임
- 2000. 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의 개정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01. 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2004. 4. 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
- 2005. 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2005. 3.31. 조준희 위원장 취임
- 2005. 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5. 9. 2.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 2006. 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 2007. 4.27. 위원회 새 CI 선포
- 2008. 4. 7. 권 성 위원장 취임
- 2009. 2.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 2009. 8. 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 9. 1.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 2010. 1.25.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외에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11. 4.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2014. 3.31.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 2014. 4.29. 박용상 위원장 취임
- 2015. 7.30. 「공직선거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4. 기구

가. 위원총회

- 구 성 : 중재위원 90명
- 기 능
 -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운영위원회

- 구 성 : 중재위원 9명
- 기 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 성 : 중재위원 7명
- 기 능
 - 언론의 보도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라. 중재부

- 구 성
 - 중재위원 5명
 -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
- 기 능
 -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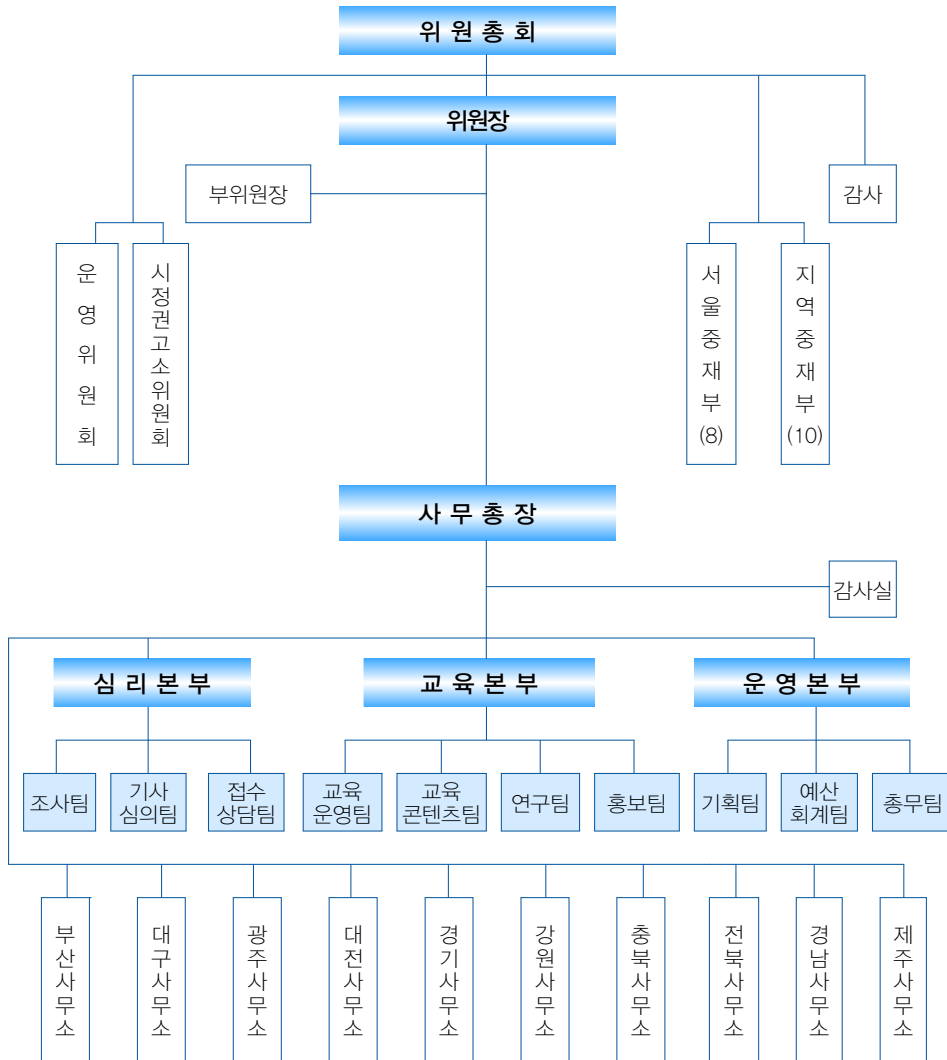
마. 사무처 기구 및 인원

- 3본부 10팀, 10지역사무소, 1실
- 정·현원표

(단위 : 명 / 2016년 12월 말 현재)

구 분	별정직	일반직	계
정 원	1	79	80
현 원	1	79	80

[위원회 기구표]



5. 2016년 예·결산


(단위 : 백만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6,103	6,088	15
경상비	경상비	2,250	2,222	28
사업비	심의사업	1,647	1,598	49
	조사연구사업	343	315	28
	홍보 및 교육사업	392	383	9
	소계	2,382	2,296	86
합계		10,735	10,606	129

6. 2016년 국정감사 주요내용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질의의원
인터넷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음에도 해당 보도와 이에 근거한 비난 댓글이 인터넷 상에 그대로 전파, 복제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인터넷 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신속히 마련할 것 	곽상도 의원 이종배 의원

7. 2016년 주요 발간물 목록

연번	발간물	발행일	발행부수
1	2015년도 연간보고서	2016. 2. 29.	300부
2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봄호	2016. 3. 1.	500부
3	언론중재 봄호	2016. 3. 30.	800부
4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2016. 4. 30.	E-Book
5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여름호	2016. 6. 1.	500부
6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6. 6. 30.	1,000부
7	언론중재 여름호	2016. 6. 30.	800부
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2016. 7. 22.	E-Book
9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가을호	2016. 9. 1.	500부
10	언론중재 가을호	2016. 9. 30.	800부
11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반인 교육교재)	2016. 10. 30.	8,000부
12	미디어와 인격권(학술지)	2016. 11. 30.	500부
13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언론인 교육교재)	2016. 11. 30.	3,000부
14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겨울호	2016. 12. 1.	500부
15	201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	2016. 12. 16.	200부
16	영문 홍보책자	2016. 12. 20.	300부
17	언론중재 겨울호	2016. 12. 30.	800부
18	언론  사람(월간 대외홍보지)	매월 1일	8,000부

이 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 기술한 연간보고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6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6 Annual Report

인쇄일 2017년 2월 25일
발행일 2017년 2월 28일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팩 스 02) 397-302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제 작 (주)계문사 02) 725-5216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